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891-01

2019. 10.

농업분야 조세감면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업분야 조세감면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0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임소영 부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원은송 연구원

- 농업분야 조세특례제도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 조세감면제도가 농업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 일관성 있는 방향 하에서 적용됨으로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감면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업인구는 빠른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도 동시에 진행되어 농업의 인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 농지 사용형태의 변화도 나타나며 경지면적과 농업인의 농지 소유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임대차 농지 비율은 증가하여 2017년 기준 51.4%에 달함.
 - 또한 소규모 농가가 연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방안으로서 농업법인을 결성하고 있으며 농업법인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음.
 -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제도가 인력 확보, 농지의 축소 방지, 농업법인의 세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우선,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지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적용시 자경 요건이 적용되는데 현실변화와 신규 인력의 확보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농지 관련 조세감면제도는 농지를 취득 또는 처분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동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를 증빙하는데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해외의 농지 관련 조세감면사례를 살펴보면 농지의 농업적 사용 원칙이 중요시하고 있으나 농지의 소유자가 반드시 자경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절대 요건이 아니며 농지를 장기 임대하여 농사에 사용하도록 한데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양도와 관련된 조세감면 제도는 농지 소유자의 자경 여부보다는 농지가 청년층에 양도되도록 하거나 농지가 농업에 사용되도록 하는데 더 주안점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농지 양도 시 감면율을 100%미만으로 낮추되 청년농에게 양도하거나 농지 은행에 일정 기간 이상 임대수탁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하는 방안 또는 자경기간에 따른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재촌 요건의 경우, 교통·통신의 발달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재촌의 범위를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①통작거리를 30km로 늘리거나 ②농지소재지와 연결한 시군구는 제외시키되 농지소재지로부터 52km 이내에 거주하도록 하거나 ③통작거리를 40km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농업 외 사업소득과 총 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 원이 넘는 기간은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농외활동이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소득 기준은 도시가구 소득의 변화에 연동되도록 하거나 농가총수입 중 농업 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인 경우에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의 고령화, 인적기반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의 유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영농 신규진입과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신규 감면 제도를 제안함.
- 청년농의 영농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과 농외 취업을 촉진하는 세제감면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청년 창업농이나 귀농인이 영농 정착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초기 정착자금의 부족임. 또한 농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폭을 확대하여 100% 감면하도록 하고 신규 진입농가가 농외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경영주가 신규 진입농가의 농외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농촌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감면 혜택으로서 농촌 주택개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전체 농촌주택 취득자로 확대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인정되는 농촌주택의 기준을 완화하여 농촌 정착에 따르는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맞지 않음.
 - 현 제도는 농촌주택을 구입하되 경제적 여력이 없어 개량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또한 농촌주택(고향주택)을 소유하고 기존 도시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때 농촌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대지면적이 660㎡이상, 취득 당시 가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함.
 - 그러나 농촌지역의 주택이 텃밭이나 마당을 가진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넓은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 군 지역 단독주택의 평균 대지면적은 660㎡를 넘고 있어 현실적으로 면적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고 판단됨.
 - 또한 귀농귀촌을 선택하게 되는 동기 중 전원생활의 쾌적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주택의 기준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면적기준을 850㎡로 상향 조정하거나 면적기준은 폐지하되 가액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신규 농업인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농업인의 담세능력과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감면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의 상속공제 한도액은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낮으며 실제 자산규모, 농지가격 상승, 영농자녀의 납세능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도액을 30억 원으로 단순 증액하는 방안과 영농경력별 차등화하여 최대 45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함.
 - 증여세 역시 농업생산으로 감당할 수 있을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증여세 한도 상향 조정 방안, 연부연납기간 확대 방안, 증여세 세율 인하 방안을 제시함.

- 규모의 경제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현행 제도 상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인 농업인은 비과세 적용되며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당 6억 원 이하로 비과세 적용됨.
- 가정을 통해 1인당 수입금액에 따른 5인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액과 개인 농업인의 소득세액을 비교하였음. 그에 따라 수입금액 6~10억 원인 농업인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불리하므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당 공제한도를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 3

제2장 농업분야 여건 변화

제3장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 운영 현황

1. 농업분야 조세체계 11
 2. 농업 분야 조세감면제도 현황 14

제4장 중소기업 및 외국의 농업 세제지원

1. 외국의 농지 관련 조세감면제도 22
 2. 중소기업 분야의 법인(소득)세 감면 38

제5장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쟁점과 개선방안

1. 자경농민의 요건 44
 2. 농업·농촌인구 유입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64
 3.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85

제6장 요약 및 결론

1. 농업 분야 조세감면의 필요성 91
 2. 조세감면제도의 개선 방향 92

참고문헌 93

제2장

〈표 2-1〉 농업법인 유형별 재무상태 10

제3장

〈표 3-1〉 농업관련 소득세 과세현황 15

〈표 3-2〉 농업분야 주요 국세감면 제도(2017년 실적) 17

〈표 3-3〉 수혜대상별 국세 감면 규모 18

〈표 3-4〉 농업분야 주요 지방세감면 제도(2017년 실적) 20

〈표 3-5〉 수혜대상별 지방세 감면규모 21

제4장

〈표 4-1〉 OECD 국가별 농지 관련 세제혜택 26

〈표 4-2〉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준 41

〈표 4-3〉 고용창출·유지 등에 대한 지원 42

제5장

〈표 5-1〉 농업인의 정의와 요건에 관한 조세감면 법조항 45

〈표 5-2〉 감면제도별 자경기간 요건 46

〈표 5-3〉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선행연구 49

〈표 5-4〉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안) 52

〈표 5-5〉 농작업별 위탁농가 현황 54

〈표 5-6〉 농가의 교통수단 보유 현황 54

〈표 5-7〉 농업법인의 농업 관련 정보시스템 활용 수준 55

〈표 5-8〉 도별 시·군의 최장거리 58

〈표 5-9〉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기준 적용 예 63

〈표 5-10〉 청년농 창농초기 어려움 66

〈표 5-11〉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장애요인(복수응답) 67

〈표 5-12〉 농촌지역 단독주택 대지면적 평균 및 증간값 70

〈표 5-13〉 매매대금 2억 원 이하 농어촌 주택 거래 비중 71

〈표 5-14〉 연령대별 귀농·귀촌 동기(5점 척도) 72

〈표 5-15〉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비교 75

〈표 5-16〉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76

〈표 5-17〉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 및 가액(2018년) 78

〈표 5-18〉 영농형태별 농가의 농업용 순자산(최댓값) 79

〈표 5-19〉 농업법인의 순자산 규모 79

〈표 5-20〉 상속공제제도 연혁 비교 80

〈표 5-21〉 지역별 호당 증여세액 추정치 81

〈표 5-22〉 영농경력별 상속공제한도 예시 83

〈표 5-23〉 농업법인 관련 세제감면제도 86

〈표 5-24〉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감면혜택 비교 89

〈표 5-25〉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및 개인농업인 소득세 시산 결과 90

제2장

〈그림 2-1〉 귀농·귀촌가구 추이 8
 〈그림 2-2〉 농업법인 및 농가수 변화 9

제3장

〈그림 3-1〉 국내 조세체계 13
 〈그림 3-2〉 농림수산물분야 국세 감면규모 14
 〈그림 3-3〉 농림수산물분야 지방세 감면규모 19

제4장

〈그림 4-1〉 중소기업 주요 세제지원 제도 39

제5장

〈그림 5-1〉 정보화기기 활용 농가 55
 〈그림 5-2〉 통작거리 예시 57
 〈그림 5-3〉 통작거리 대안별 적용 예시 59
 〈그림 5-4〉 전·겸업 농가 비중 추이 61
 〈그림 5-5〉 농가 총수입 중 농업 및 농외수입 비중 62
 〈그림 5-6〉 청년농의 유입 경로 64
 〈그림 5-7〉 영농기간별 농가소득 67
 〈그림 5-8〉 귀농귀촌 가구의 농외활동 69
 〈그림 5-9〉 경영주 연령별 농업용 순자산(최댓값, 2014~2018 평균) 83
 〈그림 5-10〉 농업법인·중소기업 세제지원 제도 비교 87

1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다양한 조세특례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범위는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까지 포괄함.
 - 대표적인 국세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면세유 등이 있으며 지방세 관련 조세지원제도에는 농지 관련 취득세 감경,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이 있음.
 - 이러한 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일몰시한이 정해진 제도임.

- 농업인 대상 조세감면은 국세와 지방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근거 법령이 되는 각 법률상 지원조건에 일관된 원칙이 없어 현장에서 제도 적용 시 혼란 발생함. 이에 각 조세 특례제도의 대상과 조건에 있어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 일선 현장에서 법 적용 시 혼란이 발생함.
 - 예를 들면, 조세감면을 받는 농업인에 대해 규정할 때 인정되는 영농기간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4년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통작거리와 관련된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농지법 간에 상이함.

- 규정 간 불일치와 더불어 조세감면의 대상과 조건이 농정의 방향이나 변화하는 농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함.
 - 예를 들면, 자경 요건인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은 현재의 농가소득원의 다각화와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위탁영농이 확대되면서 기존 재촌자경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 따라서 농업 생산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조세감면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업인력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경영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이나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세감면제도는 그동안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그쳐 농업 정책의 방향성과의 합치성이나 농업 현실 반영 여부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되지 못 하였음.

- 구체적으로 법인화 확대 기조에 발맞추어 농업법인이 보다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영세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법인의 세부담을 완화 하여 성장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 확충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활성화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신규 진입농의 어려움을 줄이고 영농정착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세감면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에 기여할 것임.
 - 구체적으로 농지나 농촌주택의 취득, 부족한 소득 확보를 위한 농외활동 지원 등 세제를 통해 지원 가능한 분야를 찾아 감면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업부문의 고령화와 인력 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농업 분야의 인력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조세감면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며 기존 제도도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를 검토하여 농정 방향과의 합치성을 제고하고 농업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특히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의 핵심요소인 농지보전과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감면제도를 제안함.

2. 선행연구

- 농업분야의 조세감면에 대한 연구는 연구 범위에 따라 개괄적인 분석을 한 연구와 특정 감면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나눌 수 있음.
 -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조세감면제도의 방향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에는 김미복·김수석(2011), 박기백·정재호(2003), 최기호 외(2013), 노용환·박진도(2015)가 있음.
 - 개별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효과분석 및 심층평가를 통해 제도 존치여부와 개선과제를 제시한 연구로는 박상원 외(2010), 김형준·김진(2007), 원종학 외(2014)가 면세유 심층평가를 수행한 연구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다룬 최준욱 외(2017),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평가한 김동준 외(2017)가 있으며 임소영 외(2018)는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특례제도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김기성(1997)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인지세에 이르는 다양한 세목에 대해서 농·임·축·수산 분야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생산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 김미복·김수석(2011)은 농업분야에 적용되는 국세와 지방세 감면을 폭넓게 살펴보고 감면제도 중 농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제도들에 대하여 지적하였음.
 - 대표적으로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른 소득세 기반 농가 지원의 근거 상실,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시 재촌 개념 미적용, 양축경영체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부재, 영농상속공제의 확대 필요성, 일반농가가 수행하는 농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필요성, 영농조합의 조합원이 획득한 비농업소득의 법인세 면제 한도 확대 필요성 등이 언급됨.

○ 박기백·정재호(2003)는 전 분야에 걸친 조세감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 연구는 농업분야 조세지원의 방향성을 생산 및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다기능성, 환경농업을 확대하는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음. 또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농업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음. 또한 외부효과나 형평성 측면에서 조세감면 제도를 점검하여 저축장려금이나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 박기백 외(2003)는 농업부문 조세지원 제도 현황과 조세지원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조세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 이 연구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와 저축장려금은 이중 혜택으로서 형평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비과세 혜택보다는 저축장려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농협 조합의 예탁금 비과세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야 하며 농업 투입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영세율, 환급 등의 제도는 자원배분의 왜곡 등 부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유류에 대한 세제지원은 농촌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한다는 차원에서 증여 및 상속에 관한 세제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임.

○ 최기호 외(2013)는 농업분야의 조세지출 항목 중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을 정비하고 농업 분야 조세지원제도를 보다 합리적·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제시함.

- 이 연구에서 제시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됨. 첫째, 개인보다는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고 둘째, 농가소득 지원보다는 농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셋째, 농업소득의 파악을 파악하여 소득을 기반으로 한 조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넷째, 세제의 단순화 및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방향 하에서 총 60개의 조세지원 제도를 평가하였음.

- 노용환·박진도(2015)는 농업 관련 보조정책과 조세지원제도 간의 연계방안을 제시하면서 면세유, 농업용 기자재 관련 부가가치세 영세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하여 농업생산비 절감에 대한 기여도, 소득역진성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김보남·김현동(2010)은 농지와 관련된 세제감면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목장용지가 5년 이후 양도될 경우 취득시기를 증여등기접수일로 하고 당시의 취득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적용해야 함.
 - 영농상속 시 피상속인이 법인의 형태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또한, 상속인의 요건이 불명확하고 공제한도액이 가업상속공제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임.
 -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납세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김동준 외(2017)는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현재와 같이 일몰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을 제안하였음.
 - 해당 제도의 부정적 환경 영향이 제한적이며 정책대상에 대한 지원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
 - 또한 해당 제도가 소득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으나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제도는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장여건의 변화추이에 따른 정책방향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음.
- 최준욱 외(2017)는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에 대하여 효과성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효율성 측면에서는 영세율 제도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누수효과나 부정유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면세유에 관한 연구들은 해당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소 비판적인 입장임.

- 원종학 외(2014)는 면세유가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한 것을 모형을 통해 보여주었으며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장·단기 방안을 주로 제시하였음.
 - 김형준·김진(2007)은 면세유가 농가의 소득보전에는 효과가 없으나 유류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면세유의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였음.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만이 면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배정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제도는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환급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박상원 외(2010)는 면세유의 경제적 근거 논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 세목에서 면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량 측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임소영 외(2018)는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 특례에 대하여 효율성이 낮고 인지도가 낮아 지원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각 제도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매우 높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2

농업분야 여건 변화

□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 농업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

- 농가인구는 2000년에 약 403만 천 명에 이르렀으나 2017년에는 242만 2천 명으로 감소함.
- 같은 기간 농림어업취업자는 226만 6천 명에서 127만 9천 명으로 감소하였음.

○ 농업인구의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업의 인적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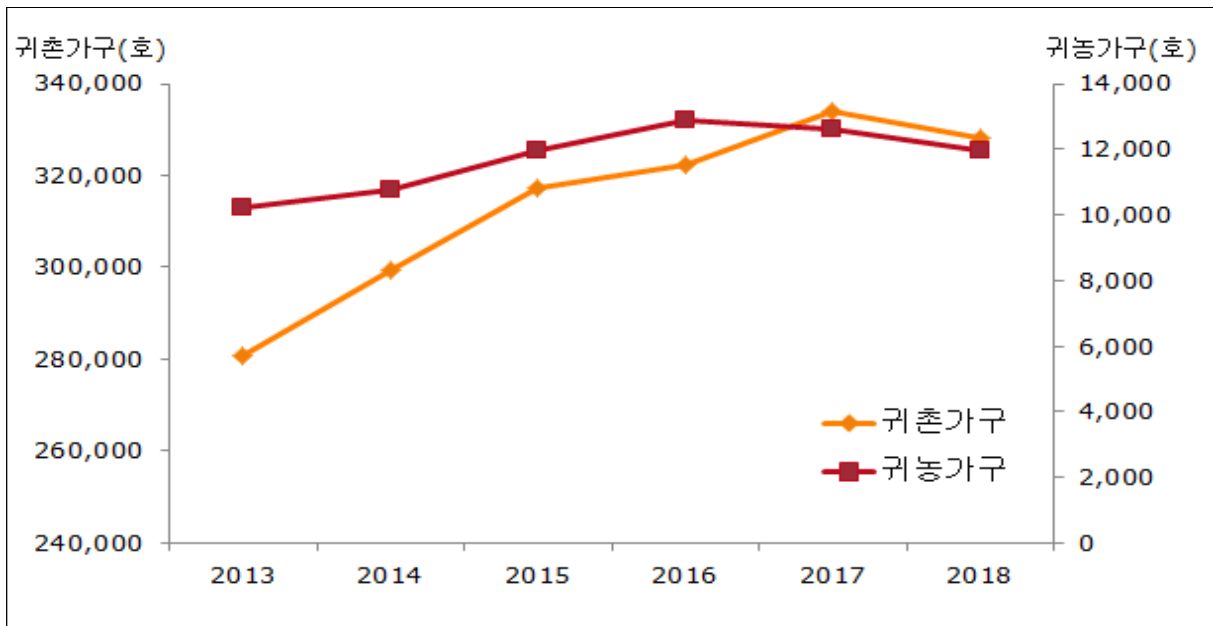
- 청장년층인 40대 이하 농가인구의 감소가 뚜렷한 반면 60대 이상의 농가인구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2000~2015년 사이에 60세 이상의 농가인구의 비중은 전체 농가인구 대비 평균 41% 수준임.
- 또한 70세 이상의 농가인구는 2000년(50만 5천 명) 이후 2015년 69만 4천 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전체 농가인구 대비 비중이 2000년 12.4%에서 2015년 27%로 급상승함.
- 반면 같은 기간 동안 20대 농가인구는 10.5%에서 5.8%로, 30대 인구는 9.2%에서 5.2%로 감소하였으며 장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도 13.4%에서 9.2%로 감소하여 농촌지역에서는 50세 미만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임.

□ 귀농·귀촌 증가세 둔화

○ 귀농·귀촌현상은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비농업 분야 경기 악화가 맞물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귀농가구는 2013년 10,202가구에서 2016년에 12,875가구로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감소하고 있음.
- 귀촌가구는 2017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섬.

그림 2-1 귀농·귀촌가구 추이



자료: 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각 연도.

□ 농지면적과 소유 및 사용형태 변화

○ 농지와 관련된 변화는 생산기반인 농지규모 축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 임차농지의 증가로 요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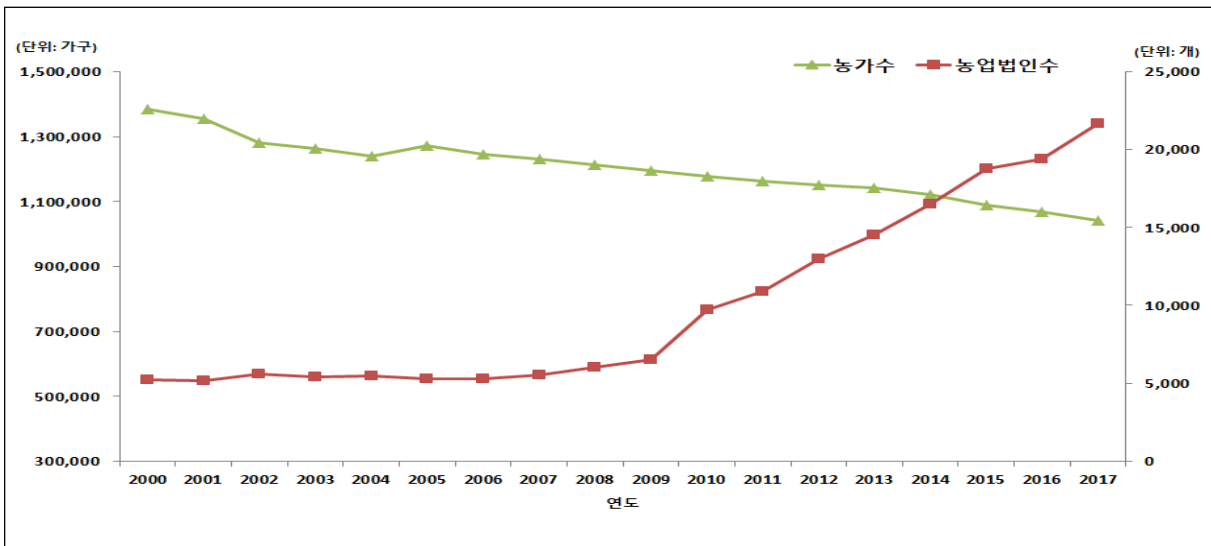
- 경지면적은 2009년에 173만 7,000ha였으나 2018년에는 159만 6,000ha로 감소함.
- 농업인의 농지소유 비율은 1995년에 67.0%였으나 2015년에 56.2%로 감소하였음.
- 임대차 농지 비율은 1960년에 13.5%였으나 2017년에는 51.4%에 달함.

□ 농업법인의 성장 부진

○ 농업분야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생산성을 높여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영농을 위해서 영세규모의 개인농가가 영농조합으로 전환되고 있음(그림 2-2).

- 농업법인은 2000년에 5,208개였으나 2017년에는 21,659개로 증가
- 반면 농가는 같은 기간 138만 호에서 104만 호로 감소

그림 2-2 농업법인 및 농가수 변화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각 연도.

○ 그러나 농업법인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 특히 농업생산법인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건실한 농업법인의 증가가 기대되기 어려움.

- 유형별로 농업법인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축산을 하고 있는 농업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업법인이 5% 미만의 자산이익률을 보이고 있음(표 2-1).

표 2-1 농업법인 유형별 재무상태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감율	
생산	작물	유동비율	106.0	113.0	111.0	136.0	109.0	0.84
		부채비율	117.0	95.0	100.0	96.0	113.0	-0.76
		자산이익률	4.2	3.5	3.4	2.6	-1.1	-
	축산	유동비율	117.0	112.0	93.0	88.0	94.0	-5.27
		부채비율	160.0	149.0	193.0	247.0	200.0	5.63
		자산이익률	4.7	9.1	-2.2	-4.0	6.0	-
생산 외	가공	유동비율	128.0	122.0	124.0	130.0	127.0	-0.35
		부채비율	210.0	234.0	199.0	218.0	235.0	2.84
		자산이익률	2.9	0.4	2.0	1.3	2.1	-
	유통	유동비율	148.0	144.0	159.0	149.0	151.0	0.51
		부채비율	180.0	189.0	182.0	179.0	179.0	-0.06
		자산이익률	3.2	2.9	2.7	2.6	2.8	-
	기타	유동비율	116.0	107.0	118.0	116.0	128.0	2.67
		부채비율	141.0	161.0	158.0	164.0	177.0	5.86
		자산이익률	2.9	2.5	3.0	2.9	3.4	-
	서비스	유동비율	124.0	125.0	108.0	118.0	112.0	-2.69
		부채비율	105.0	98.0	117.0	106.0	111.0	1.51
		자산이익률	2.0	2.1	-0.6	-1.0	0.2	-
겸업	유동비율	116.0	133.0	110.0	99.0	122.0	1.23	
	부채비율	141.0	143.0	137.0	168.0	127.0	-2.69	
	자산이익률	1.6	2.3	1.8	-0.04	3.1	-	

자료: MDIS. <<http://mdis.kostat.go.kr>>. 접속일: 2017. 6. 29.

3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 운영 현황

1. 농업분야 조세체계

- 우리나라의 조세는 크게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와 지자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뉜.
- 국세는 개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 법인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주요 세목이며 이들 주요 세목이 전체 세수의 80.1%를 차지함(2018년 기준).
- 국세 중 농업과 관련된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임.
 - 소득세는 개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에 과세되는데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에 편입됨.
 -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양도소득과세표준¹⁾에 세율을 곱해 산출함.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됨. 세율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임.
 - 상속증여세는 상속 또는 증여하는 모든 재산(농지 포함)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납세의 무자는 상속인 또는 수증자임. 세율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1)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액을 공제한다.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임.

-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 특정 장소에의 입장,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유류, 승용차 등 농업 분야 투입재를 포함함.
- 주세는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 전통주도 과세대상에 포함됨.
-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주세액에 부가되는 세금임.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별도합산토지의 고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지방세 중 농업과 관련된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임.

- 취득세는 농지, 농업용 건축물 등의 취득 시 부과되며 농지에 대한 세율은 매매 2.3%, 상속 3.0%임.
-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재산, 차량 등의 등기·등록 및 면허·허가 시 과세되는 세금으로 면허 소지한 경우 면허분을 과세함.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부가세로 부가가치세액에 포함하여 징수한 후 각 시도에 배분하는 공동세 성격을 가지는 지방세이며 세율 11%를 적용함.
- 지역지원시설세는 지역 균형개발 및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 확보,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임. 특정 자원의 종류와 특정 부동산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며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지하수는 비과세임.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개인 및 법인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짐. 균등분 과세액은 개인 1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 5~50만 원, 재산분은 연면적 1㎡당 250원, 종업원분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임. 단, 영농 종사하는 개인 및 법인의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는 면제됨.
- 재산세는 토지²⁾,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할 경우 부과되며 농지에 대해 일반 토지 0.2%보다 낮은 0.07% 세율을 적용함.

²⁾ 토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70%임.

-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며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됨.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 공제·감면액의 10% 감면함.

그림 3-1 국내 조세체계

국 세 (14개)	소득세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법인세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상속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
	증여세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종합부동산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
	개별소비세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물품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경유, 대체유류 등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할 때 부과하는 조세
	주세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수량이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비세
	인지세	재산권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경우, 그 문서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증권거래세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교육세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조달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
	농어촌특별세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
	관세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
지 방 세 (11개)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레저세	경마, 경륜 및 소싸움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담배소비세	제조·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과세표준(부가가치세총액)의 15%를 지방세로 이양
	주민세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부과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과세(소유분)와 도로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과세(주행분)로 분류
	지역자원시설세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하는 목적세

자료: 기획재정부, 『2018 조세개요』,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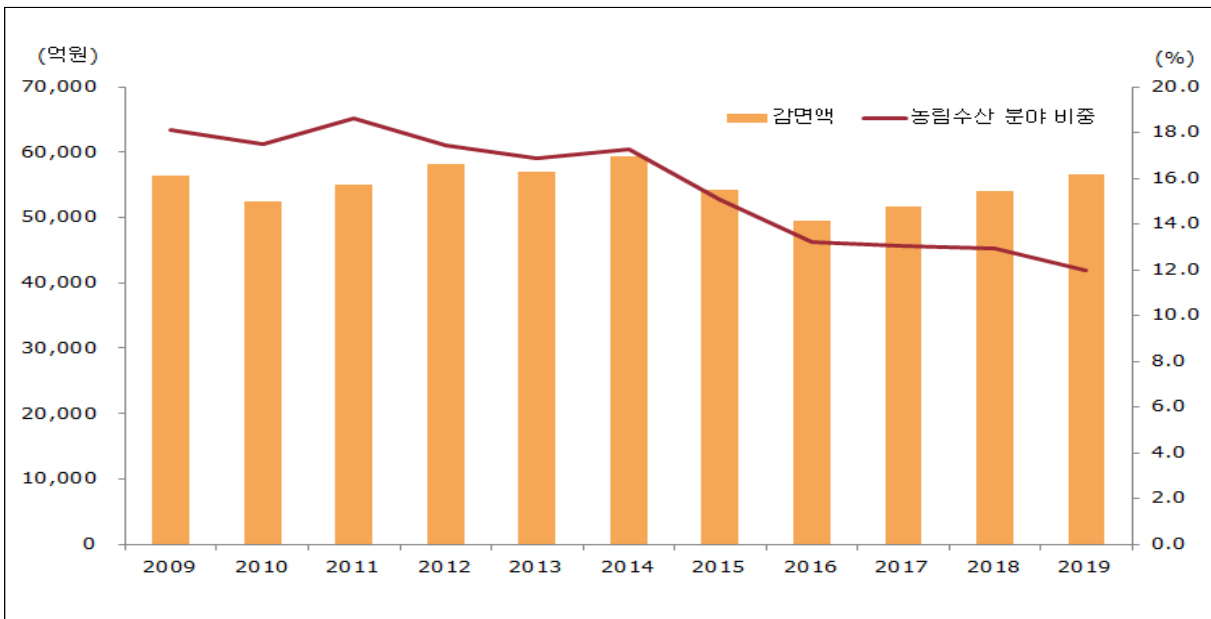
2. 농업 분야 조세감면제도 현황

2.1. 국세

○ 농림수산 분야의 국세 감면액은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하나 대체적으로 총 규모가 5~6조 원 내외임.

-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은 감면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워 합산 시 포함되지 않았으며 만약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농업 분야 국세 감면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됨.

그림 3-2 농림수산분야 국세 감면규모



주 1) 비중은 전체 국세감면액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임

2) 2018, 2019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농림수산 분야 국세 감면액이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타 분야의 감면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농림수산 분야 감면액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임.

- 농림수산 분야 국세 감면액 비중은 2009년에는 18.7%에 이르렀으나 2019년에는 12.0%로 하락하였음.

- 같은 기간 사회복지 분야는 감면액이 6조 9,039억 원(2009년)에서 15조 8,788억 원(2019년)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국세 감면액도 8조 4,990억 원에서 12조 2,348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 농업 분야 국세 감면은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음.

○ 소득세와 관련된 감면조항은 작물재배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와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임.

- 식량작물재배업을 통해 얻은 소득과 수입금액 10억 원 이상의 작물재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임(표 3-1).
- 자경농지, 축사용지, 산지 등을 일정 기간 이상 자경한 농업인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표 3-1 농업관련 소득세 과세현황

농업 분류		과세 내용
작물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과세 제외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 비과세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기타 작물재배업	
	시설 작물 재배업	
축산업		농가부업규모 이하 비과세
기타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과세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서비스업	

자료: 임소영 외, 2016.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경제적 함의와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감면조항은 미가공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비롯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등이 주요한 감면 제도임.³⁾

3) 미가공 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업과 관련되어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해당되므로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농림수산 분야로 분류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농림수산 분야 국세 감면규모 총액 계산 시 두 제도의 감면액은 제외하였음.

- 이들 중 미가공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은 농업인이 아닌 농산물 소비자에 대한 감면이지만 해당 조항이 농업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 관련 감면조항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미가공 농산물을 구매하는 제조업자나 외식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영농자녀가 농업인으로부터 영농자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영농을 이어가는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증여세 감면을 부여하고 있음.
- 법인세와 관련된 감면조항은 농업법인이 식량작물과 그 외 작목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항과 농협 등 협동조합이 얻은 법인소득에 대해 100분의 9의 저율로 과세하는 조항을 포함함.
- 그 외에도 농협 등 협동조합에서 용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증서, 농협 등이 조합원에게 발행하는 통장 및 예·적금증서,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발생하는 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면제됨.
- 국세 감면 내역 중 가장 많은 규모의 감면을 기록한 것은 농업 관련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로서 해당 제도로 인해 1조 6,090억 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되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1조 2,401억 원, 면세유 감면 규모가 1조 1,549억 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2017년 실적).

표 3-2 농업분야 주요 국세감면 제도(2017년 실적)

단위: 억 원

세목	감면내용	근거 법령	감면세액
소득세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12조	추정곤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12조 2항	추정곤란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12조 2항	187
	8년 이상 자경농자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조특법69조, 69조의2	12,401
	농지 대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특법 70조	55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조특법 87조의2	122
	농어촌주택 취득후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조특법 99조의4	추정곤란
	조합원 배당소득·예탁금이자 비과세	조특법 88조의5, 89조의3	5,521
부가가치세	미가공 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26조 1항	추정곤란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특법 105조	16,090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농업기계)·축산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조 2항	55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특법 105조 의2	1,219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조 1항	추정곤란
	농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 면제	조특법 106조의2	11,549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42조	25,323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21조의23	480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조특법 71조	436
	영농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 2항	176
법인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특법 66조, 67조 1항	284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법 68조	154
	농협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특법 72조	2,451
인지세	농업인의 용자, 예금에 따른 인지세 면제	조특법 116조 1항	26

주1) 여러 세목에 대해 감면을 허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세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음.

2) 굵게 표시된 것은 일몰적용되는 제도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8.

○ 국세 감면 제도는 총 22개로 이 중 14개 제도는 일몰제도로 운영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면세유,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에는 일몰시한이 적용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전답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기한 없이 운영되고 있음.

○ 국세 감면 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 농업인 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농업인에 대한 국세 감면규모는 농업분야 전체 국세 감면액의 92.7%를 차지하고 있음 (2019년 기준).

표 3-3 수혜대상별 국세 감면 규모

단위: 억 원

수혜대상	'15	'16	'17	'18(전망)	'19(전망)
농업인	51,458 (94.8)	46,314 (93.5)	48,514 (93.7)	50,263 (92.7)	52,601 (92.7)
농업법인	440 (0.8)	458 (0.9)	351 (0.7)	454 (0.8)	476 (0.8)
농협 등 협동조합	2,376 (4.4)	2,775 (5.6)	2,931 (5.7)	3,477 (6.4)	3,642 (6.4)
합계	54,274 (100.0)	49,547 (100.0)	51,796 (100.0)	54,194 (100.0)	56,719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2. 지방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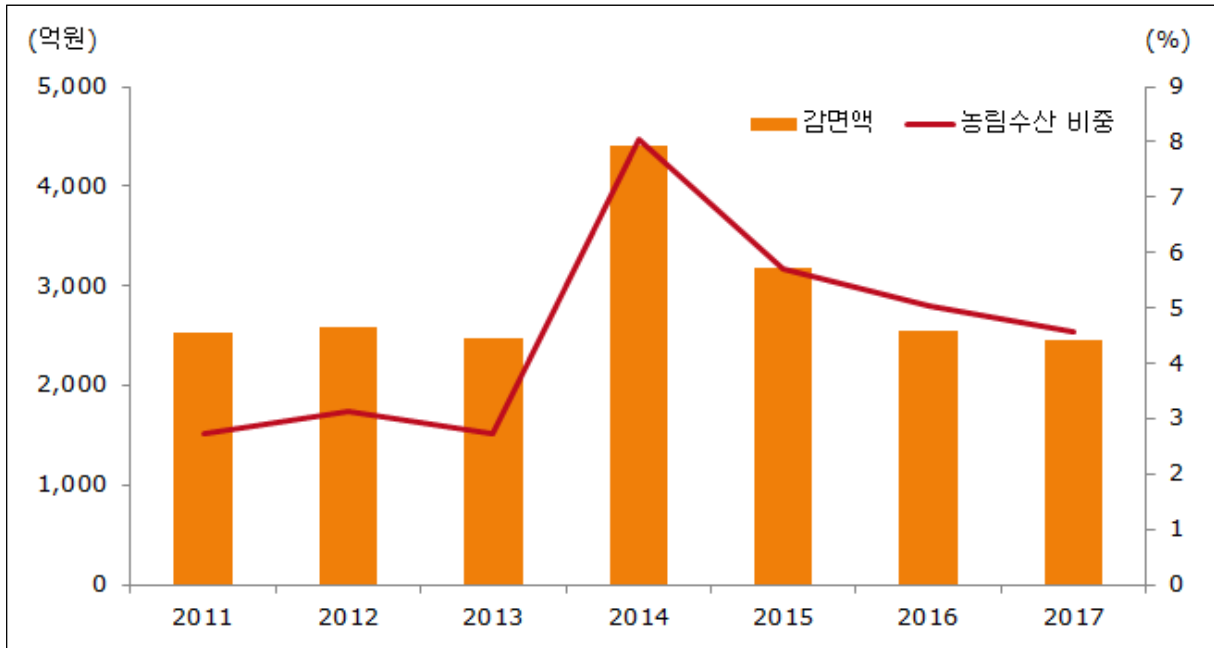
○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협 등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가 감면 세목임.

○ 농업 분야 지방세 감면액은 2014년을 기점으로 2014년 이전에는 2,500억 원 내외에 머물렀으나 2014년에는 4,412억 원으로 급증하였다가 2017년에는 2,455억 원으로 하락하였음.

- 지방세 감면액이 2014년에 급증하였던 이유는 그 해에 농·축협의 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조합 합병시 법인등기 및 재산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액이 급증하였기 때문임.⁴⁾

4) “농업·금융·유통환경 급변... ‘농·축협 합병’ 움직임 활발” (농민신문 2014.08.27)

그림 3-3 농림수산분야 지방세 감면규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농업 분야가 전체 지방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4년 이전에는 3% 내외 수준이었다가 2014년에 8.1%까지 치솟았으며 이후 5% 내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주요 감면제도는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농업법인 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 농업법인 설립 후 2년 이내 취득 부동산 취득세, 법인 설립 등기 등록 면허세 면제 등임.
 - 영농을 2년 이상 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통합하여 “자경농민”)이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50% 감면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 농업법인은 농업법인 설립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 받음.

표 3-4 농업분야 주요 지방세감면 제도(2017년 실적)

단위: 백만 원

세목	감면내용	근거 법령	감면세액	
취득세	자경농민 농지 및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지특법6조1항 2항	83,364	
	귀농인의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6조4항	3,500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 및 자동차세 면제	지특법7조1항	90	
	농업용 관정시설 취득세 면제	지특법7조2항	509	
	농지(임야)확대개발을 위한 농지(임야) 취득세 면제	지특법8조	810	
	농업법인 설립 후 2년 이내 취득 부동산 취득세, 법인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특법11조1항	23,714	
	농업법인 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지특법11조2항	38,251	
	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및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특법13조2항	14,870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면제	지특법15조1항 2항	61	
	농협·산립조합의 회원들의 교육·지도·지원사업·공동이용시설 및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특법14조2항	6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특법14조1항	283	
	재산세	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및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특법13조2항	2,354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특법14조1항	582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지특법14조3항	24,037	
농업용 관정시설 재산세 면제		지특법7조2항	530	
농업법인 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지특법11조2항	2,336	
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지특법13조2항	3,487	
농지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지특법35조의2	556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면제		지특법15조1항 2항	26,694	
등록면허세	농업법인 설립 후 2년 이내 취득 부동산 취득세, 법인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특법11조1항	2,336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지특법6조 3항	280	
주민세	농림, 축산업 및 수산업의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지특법10조2항	1,471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50% 경감	지특법14조4항	11	

주: 여러 세목에 대해 감면을 허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세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8.

○ 지방세 감면 수혜대상은 크게 농업인 개인, 농업법인, 농협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농업인에 대한 감면세액 비중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전체 감면액의 54.8%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농협 등 협동조합이 19.9%, 농업법인이 18.0%로 잇고 있음.

표 3-5 수혜대상별 지방세 감면규모

단위: 억 원, %

수혜대상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업인 (농촌거주자, 임업후계자 포함)	1,459 (57.5)	1,404 (54.4)	1,349 (54.5)	1,491 (33.8)	1,390 (43.7)	1,364 (53.3)	1,346 (54.8)
농업법인	206 (8.1)	264 (10.2)	283 (11.4)	457 (10.4)	501 (15.7)	373 (14.6)	441 (18.0)
농협 등 협동조합	527 (20.8)	535 (20.7)	524 (21.2)	2117 (48.0)	749 (23.5)	501 (19.6)	489 (19.9)
농어촌공사	337 (13.3)	371 (14.4)	313 (12.6)	338 (7.7)	535 (16.8)	313 (12.2)	172 (7.0)
농수산물유통공사	7 (0.3)	7 (0.3)	7 (0.3)	9 (0.2)	8 (0.2)	7 (0.3)	7 (0.3)
합계	2,536 (100.0)	2,581 (100.0)	2,476 (100.0)	4,412 (100.0)	3,183 (100.0)	2,557 (100.0)	2,45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4

중소기업 및 외국의 농업 세제지원

1. 외국의 농지 관련 조세감면제도⁵⁾

1.1. 개황

- 동일 규모의 타 업종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토지는 농민에게 가장 큰 자산이므로 재산세(Capital taxes)는 농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에 따라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농민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데 매각이나 상속에 의한 농지 양도에 대해서도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 토지세(Land taxes)는 보통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설정 및 부과함. 농지 위치는 지자체가 토지대장(토지등록)에 따른 농지평가 시 적용하는 계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적용 세율 및 규정은 동일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예를 들면, 캐나다의 농지 과세는 지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이 다르게 적용됨.
 - 농지 및 농촌주택(Farm dwellings) 등 일부 재산에 대한 면제
 - 농민의 세금 납부액 중 일부를 지자체에서 세금 환급

⁵⁾ OECD (2018) "Taxation in agriculture". Discussion at the 77th session of the 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TAD/CA/APM/WP(2018)30/REV1을 참고하여 작성함.

- 농가 자산(Assessments of farm properties)에 대해 공정시장(Fair market) 및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
- 농지 사용을 변경하지 않는 한 조세 이연 가능
- 농업부문의 최고 세율 인하

○ 국가별 재산 관련 세금 감면 방식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음.

- 토지세(Land taxes) 납부 면제
- 자산평가 시 시장가치보다 낮게 평가
- 재산세 세율 할인
- 농지 사용 및 경작 시 농지세 할인
- 지방사업세 감면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감면
- 상속·증여세 감면

○ 토지세 납부 면제

- 캐나다(일부 지역), 핀란드,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농촌주택 제외), 슬로베니아(농업용 건물 제외), 스웨덴, 영국은 농지에 대해 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함.
- 캐나다(일부 지역), 프랑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온실), 폴란드,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는 농업 생산 건물에 대해 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함.
- 농지 관련 세금 감면은 생산 또는 특정 작물과 연계하여 부여되기도 함. 예를 들면 체코는 경작지, 홉(Hop) 재배원, 포도밭, 과수원, 영구 초지에 대해 세금 면제 또는 1/2 ~ 1/5배 낮은 과세 부과

○ 시장가치보다 낮은 수준의 자산 평가

- 일부 국가의 농민들은 시장가치보다 낮은 토지대장 상의 농지가치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함.
-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코스타리카, 캐나다(일부 지역), 덴마크, 일본, 라트비아, 스위스, 미국이 이에 해당됨.

○ 재산세에 대한 할인 세율 적용

- 농업인은 농지와 농업용 건물에 대해 할인된 재산세를 적용받음.
- 벨기에(소규모 재산 세액 공제), 캐나다(일부 지역), 칠레, 콜롬비아(소농 재산),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농지는 비개발 토지 재산세의 20% 감면), 한국(농지에 대해 매우 낮은 일률과세), 슬로바키아(농업용 건물), 우크라이나가 해당 국가임.
- 칠레에서는 4년 전부터 농업인의 기 할인된 토지세율에 추가 할인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토지세액의 증가율이 10% 이내에 제한되도록 함(2019년 말까지 유효).

○ 농지 사용 및 경작 장려를 위한 토지세 할인

- 몇몇 국가에서는 농지의 방치를 막기 위해 토지세 감면을 부여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2017년부터 유휴 농지 또는 임대 농지에 대한 세율을 1.8배 인상하는 한편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소유주에게는 부동산세를 50% 감면함.
- 리투아니아는 경작지에 대한 토지세의 35%를 감액하며 보유 토지 중 방치된 농지 발견 시 감액을 보류함.
- 코스타리카는 토양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을 한 농업인에게 토지세의 40%를 감면함.
- 체코에서는 간척농지에 대해서 5년간, 간척 산림지에 대해서 25년간 재산세를 면제함.
- 라트비아는 보호지역(Conservation areas) 내 토지에 대해 세금을 면제함.
- 한편 청년농에게 재산세를 인하하기도 하는데 프랑스는 최초 5년간 미개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환급하고 있으며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최초 3년간 토지세를 면제함.

○ 지방 소득세(Regional business taxes) 면제

- 프랑스와 이탈리아 농민들은 지방 소득세(Regional business taxes) 면제
- 그리스는 이십 만 유로 이상의 재산 및 건물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세금 계산 시 농지를 제외함.

○ 양도, 취득 및 인지세 감면

- 농장 및 농업용 건물 구매 시, 많은 국가에서 양도, 취득 및 인지세 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 조세감면은 농업의 연속성을 장려하기 위해 지속적인 농업 생산을 전제로 제공되고 있음.
-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네덜란드(상업재배 중인 토지에 따라)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은 농지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거나 세액을 공제함.
 - 오스트리아는 가족농장의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 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농지를 평가하여 양도세를 부과함.
 - 또한 농지를 가업 승계할 가족구성원 또는 전문농민에게 양도할 경우에 세금 감면하고 있는데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폴란드, 스페인이 이에 해당됨.
 - 프랑스, 핀란드, 아일랜드에서는 청년농에게 양도세 감경 또는 완전 면제를 적용하고 있음.
 - 슬로베니아는 농업 채권 사업장 내 농지의 양도세 면제, 한국은 농업협동조합에 의한 농지 매입 면제를 적용함.

○ 상속 및 증여세 감면

- OECD 회원국들은 농업활동 지속 조건으로 가족 간의 농장 상속에 대한 상속세 감면을 적용함. 농가가 나뉘지 않고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정책 목표임.
- 프랑스에서는 농촌 재산을 장기 임대할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일부 면제하고 있으며 헝가리에서는 상속인이 농업인이면 정규 상속세의 50% 또는 25%만 납부하면 됨. 이 외에 아일랜드, 폴란드, 영국, 한국, 슬로베니아(이미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게 이전(Transfer)될 경우 면제), 미국에서 상속 및 증여세 감면이 이루어짐.
- 세액공제 방식 외에 시장가격보다 낮게 농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줄이는 방식도 있는데 일본, 핀란드, 미국에서는 상속세 목적의 농지가치를 시장가치보다 40~70%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에서도 농업재산의 시장가치를 90% 축소하여 평가함.
- 상속·증여세 감면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농업인 요건을 갖추거나 이미 노동시간의 최소 50% 이상을 해당 농지에서 경작하며 상속된 토지를 이용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짐.
- 한편 일본에서는 농지에 대해서 과세 유예를 허용하며 아일랜드는 농업재산 상속에 따른 자본 취득세 분할 납부 시 이자율을 인하함.

표 4-1 OECD 국가별 농지 관련 세제혜택

국가	보유(재산)세	양도, 취득 및 인지세	상속 및 증여세
오스트리아	재산세 계산시 농업 특례 과세표준 적용	가죽 내 농업재산 양도는 토지 평가가격의 2% 특혜세율 적용	비과세
벨기에	- 농경지에 대한 연간 보유세 감면 - 세금은 토지대장의 평균소득으로 계산하며 25% 공제 (영세농 50%)	- 토지 가치가 비슷한 경우, 농민 간 토지 거래의 판매세 면제 - 토지 가치가 비슷하지 않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판매세 적용 (초과분이 가치가 가장 낮은 부동산 가치의 25% 미만이면 6% 이하 세율 적용)	감면혜택 없음
캐나다	- 주거용 농지 및 농지등 일부 자산에 대해 면제 - 농지 재산을 공정 시장/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 - 농민이 지불한 세금 일부를 지방 정부에서 환급 - 농지를 비농업 용도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과세이연(면제) - 농업부문 최고세율 인하		비과세
칠레	- 최근 4년간 더 할인된 농가에게 부동산세 낮게 적용 - 농지는 시장가격이 아닌 평가된 가치임	감면혜택 없음	감면혜택 없음
콜롬비아	- 영세농가에 대해 세율 인하	면제	감면혜택 없음
코스타리카	- 농지는 시기가 아닌 토지 이용 기준으로 평가 - 토지 보전을 위해 농민에게 연간 재산세 40% 감면	감면혜택 없음	
크로아티아	감면혜택 없음		감면혜택 없음
체코	- 세율은 토지 용도에 따라 다르며 해당 지자체가 토지대장에 따라 매개 변수에 대한 계수 설정 - 경작지, 휴 정원, 포도원, 과수원 및 영구적 초지는 토지세 면제 또는 세율 2~5배 낮음 - 세율은 0.25%(목초지, 임업)~0.75%(농작물) - 간척농지는 5년간 면제(매립 산림지는 25년)	감면혜택 없음	감면혜택 없음
덴마크	농지 자평가 및 지방 토지세 세율 할인	감면혜택 없음	감면혜택 없음
에스토니아	토지 세율 감소	감면혜택 없음	감면혜택 없음
스위스	자산가치가 아닌 자산의 연수익에 대해 재산세 부과		
스웨덴	농지, 농업용 건물 및 산림지 재산세 면제	감면혜택 없음	비과세

국가	보유(재산)세	양도, 취득 및 인지세	상속 및 증여세
핀란드	토지세 면제 - 농가용 건물 재산세 면제 - 농지는 비 개발 토지에 대한 재산세(TFNB) 20 % 인하 - 농민이 기후로 인한 소득 감소에 비례하여 비 개발 토지 재산세(TFNB) 감면 주장 가능 - 농가가 기후 전염병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대한 환급 요청 가능 - 정착 보조금을 받는 청년농은 최초 5년간 재산세 50% 환급 - 농가의 지역 사업 세금 면제 - 농업용 매탄화시설 및 건물은 기업 재산세(CFE), 개발토지 재산세(TFPB) 영구적 면제	청년농 양도세 면제 - 임차인이 2년간 토지 사용, 5년 이상 토지 개발할 경우, 농촌 건물 및 농지 취득 양도세를 농업용 건물과 토지 취득시 거래세 0.75%로 감면(기준 5.80%) - 단, 임차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 전 2년 이상 경작, 취득 후 5년간 의무경작 - 정착 지원 대상 청년농이 농촌 재생 지역 농가 취득시 주택 가격의 99,000 유로 상당분에 0.715% (기준 5.80%)의 세율 적용	농장 시장가치보다 낮게 평가. 상속인 10년간 운영 의무 - 장기 임대된 농촌 재산은 기부 또는 상속에 대한 양도세 일부 장기 임대된 재산은 상속 및 증여세 일부 감면
프랑스			
독일	감면혜택 없음		
그리스	농지의 부동산 총액이 200,000€ 초과 시, 적용되는 부가세를 총액 계산에서 제외	면제	감면혜택 없음
헝가리	- 축산업, 직물재배업, 저장용 건물은 지방 건물 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 - 농업용 토지는 지자체 재산세 면제	면제(특정 조건 하)	- 일반 상속세의 50%를 농지 소유권, 토지 사용자 권리에 대해 납부 - 상속인이 등록된 농부일 경우, 일반 상속세의 25% 지불
아일랜드		- 숙련된 청년농에게 농장 이전 인지세 면제 - 친족 간 거래의 인지세 면제 - 농지통합을 위한 인지세 감면 - 자본 이익세/자본 취득세 감면 - 자본 취득세 분할 납부에 대한 금리 인하	- 자본취득세 계산시 농지가격을 시장가치의 10%로 평가 - 농업재산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시 저금리 적용
이스라엘	감면혜택 없음	비과세	감면혜택 없음
이탈리아	- 재산세 면제 - 생산 활동에 대한 지방세 면제	전문농가 구매 또는 인지세 면제대상이 구매시 감면 세율 적용	
영국	농지 및 농업용 건물은 연간 재산세 면제		토지 경작 시 상속증여세 면제 또는 크게 감면
미국	공정 시장가치보다 "농가 사용 가치"로 농지 평가. 지방 재산세 감면		상속세 계산 시 자산가치를 공정시장가치보다 40~70% 가량 낮게 평가

국가	보유(재산)세	양도, 취득 및 인지세	상속 및 증여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토지세에 대해 농지 가치 우선 평가 - 농지는 도시계획세-특별 토지보유세(시민세) 면제 -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한 토지는 부동산세 50% 인하 - 토지 임대하지 않거나 경작재개하지 않을 경우, 유휴지에 부과된 세율 1.8배 증가 	<p>농지 양도 시 감면된 부동산 취득세율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상 농업종사자가 취득한 농지에 대해 양도세 50% 감면 - 귀농인에 대해 취득세 50% 인하 - 농협의 농지 취득세 면제(2019년까지) 	<p>상속세 대상 농지는 과세표준 우선평가 및 과세 유예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자와 증여자의 관계 및 지속적인 농사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 농민 직계 후손이 상속받아 5년간 경작할 경우, 농지 상속세 최대 15억 원까지 감면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재산세 0.07% 고정 이자율(0.07%부터 누진세율) - 토지 소유자가 농지 연금가입자이며 현재 농지를 적극적으로 경작할 경우, 재산세 면제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 지역 또는 새로 심은 산림지의 농지 및 농업용 건물은 부동산세 면제 - 토지의 지적 가치에 따라 부동산세 부과. 단, 정부규제로 농지가 격 증가를 제한 (2016~2025년)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활동에 사용되는 건물 비과세 - 농업 활동 미사용 건물은 그 가치에 따라 감세율 적용 - 농업활동으로 소득이 총소득의 50% 이상 발생 시, 농업회사 및 협동조합 건물 비과세 - 경작지에 대한 토지세 35% 인하. 유기 농지 발견 시 할인 적용불가 - 새로운 가족농장 설립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3년간 토지세 면제 		<p>감면혜택 없음</p>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cadastral) 가치에 따라 세금 부과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은 부동산세 면제 	<p>농업, 임업용 경작지 취득세 면제</p>	<p>감면혜택 없음</p>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혜택 없음 	<p>비과세</p>	<p>비과세</p>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재산은 지방 재산세 면제(농장 주택 제외) 	<p>비과세</p>	<p>비과세</p>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에게 소득세 대신 지방 농업재산세 부과. 다수의 면제 적용 가능 - 농업용 건물은 부동산세 면제 	<p>농민 은퇴 후 농장 소유권을 친인척에게 양도 시 면제</p>	<p>농업 재산 및 농업용 건물은 상속 및 증여세 면제. 농가 주택은 특정 조건에서 면제 가능</p>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건물에 세율 인하 	<p>비과세</p>	<p>비과세</p>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건물은 부동산 세 면제 - 농지 및 산림지는 토지세 면제 (농업용 건물 제외) 	<p>농지채권 사업장 내 농지 양도세 면제. 아닐 경우 양도세 부과</p>	<p>이미 농지를 소유 한 농가에게 농지 이전될 경우, 면제</p>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혜택 없음 		<p>감면혜택 없음</p>

자료: OECD(2018). "Taxation in agriculture". Discussion paper at the 77th session of 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TAD/CA/APM/WP(2018)30/REV1.

1.2. 주요 국가의 농지 관련 세제지원⁶⁾

1.2.1. 일본

가. 농지 양도에 대한 특례제도⁷⁾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수입금액 - (취득비용+양도비용) - 특별공제액
 -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 소득세율 15%, 주민세 5% 부과
 - (취득 후 5년 미만 경과) 소득세율 30%, 주민세 9% 적용

- 특별공제액은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별화하여 적용함.
 - 800만 엔 특별 공제
 - ① 권고에 대한 협의, 조정, 알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 ② 농지중간관리기구 또는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 ③ 농지이용집적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 1,500만 엔 특별 공제: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근거한 매입협약에 의해 농지중간관리기구 또는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에 매도하는 경우

- 농지 양도에 대한 특례제도는 구조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띠.
 - 특별공제로 인정되는 양도 방식은 구조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함.

⁶⁾ 흥범교 외(2016)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현재 해당 국가별 제도의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하였음.

⁷⁾ 농무성. <<http://www.maff.go.jp/j/aid/zeisei/nou/attach/pdf/index-33.pdf>>. 접속일: 2019.10.16.

나. 농지 취득과 관련된 특례제도⁸⁾

- 담당자 농업인⁹⁾이 농지이용집적계획을 활용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세율을 1%로 저율과세 적용(기본세율 2%)
- 농용지이용집적계획을 활용하여 농지를 구입한 경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의 3분의 1을 공제
- 농지중간관리기구나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가 농지매매 등의 사업 실시로 농지를 구입한 경우 부동산취득세 징수 유예, 5년 이내 매도 시 납세의무 면제

다. 농지 증여·상속과 관련된 특례제도¹⁰⁾

- 농지 매도에 의한 경영 축소 및 농지분할 방지 목적으로 농지에 대해 증여세 및 상속세 납세 유예 제도를 시행
- 농업경영자가 농업후계자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 농업후계자의 증여세 납세 유예, 증여자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 면제(대신 상속세 부과, 상속세 납세유예 활용 가능)
 - 증여자 조건: 농지 등 증여일까지 해당 농지에서 농업 3년 이상 계속 영위
 - 수증자(후계자) 조건
 - ① 농지 등 취득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 ② 농지 등 취득일까지 3년 이상 농업 종사
 - ③ 농지 등 취득일 이후 농업 경영
 - ④ 담당자 농업인

⁸⁾ 농무성. <<http://www.maff.go.jp/j/aid/zeisei/nou/attach/pdf/index-25.pdf>>. 접속일: 2019.10.16.

농무성. <<http://www.maff.go.jp/j/aid/zeisei/nou/attach/pdf/index-25.pdf>>. 접속일: 2019.10.16.

⁹⁾ 특례 적용 대상인 '담당자 농업인'은 구체적으로 인정농업자, 특정농업법인, 시정촌 가본 구상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의 지표를 만족하는 자, 경영규모의 확대를 행하고자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자임.

¹⁰⁾ 농무성. <<http://www.maff.go.jp/j/aid/zeisei/nou/attach/pdf/index-27.pdf>>. 접속일: 2019.10.16.

- 농업경영자가 상속한 농지를 상속인이 농업 지속 또는 특정 대부¹¹⁾, 공인 도시농지 대부 등 실시할 경우 상속인에게 농업 투자 금액 초과분에 대한 상속세 과세 유예
 - 피상속인 범위: 사망할 때까지 영농 종사한 자, 생전 농지 일괄 증여자, 사망일까지 특정 대부나 공인 도시농지 대부 등을 한 자
 - 상속인 범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영농 시작 또는 계속 영농한 자, 생전에 농지 일괄 증여 받은 수증자,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특정대부나 공인 도시농지 대부 등을 한 자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상속세 유예 세액 면제 가능
 - 상속인의 사망, 상속인이 특례 적용 농지 등을 증여세 납세 유예를 적용받아 생전 일괄증여한 경우, 상속인이 20년 이상 영농을 계속 했을 경우

- 증여세 및 상속세의 납세유예가 중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수증자(후계자) 또는 상속자가 농업 경영을 폐지하는 경우, 납세 유예 적용 농지의 매도, 대부, 전용 또는 경작 포기하는 경우
 - 대부 중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의거한 대부, 질병, 장애 등의 영농 곤란으로 인한 대부는 예외로 인정

- 특례 적용 농지 등의 양도 후 1년 이내 양도에 의한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농지 취득에 충당한 경우 양도 없었던 걸로 간주, 과세 유예 지속(환매 특례)

- 재배지역의 단지화, 농지의 집단화를 목적으로 농지이용집적계획에 따라 납세 유예 농지를 대부하고 차입한 대체농지에서 영농 지속 시 납세 유예(차환 특례)

- 3대 도시권의 특례 적용 농지 등을 수용 교환 등에 의해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3대 도시권 소재 농지를 농업용으로 대신할 경우 과세 유예(교환 특례)

11) 증여세 및 상속세 납세 유예 대상 농지를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의거한 사업으로 대부하는 것임. 해당 사업으로 농지중간관리사업,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 이용권설정 등 촉진사업(농지이용집적계획)이 있음.

1.2.2. 독일

가. 토지양도 관련 조세특례¹²⁾

○ 토지, 작물, 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유보분으로 설정하여 발생연도 후 4년 동안 동일한 종류의 자산취득비용과 상계할 수 있음.

- 매각이익: (판매가액-판매비용) - 장부가액
- 상계대상 매각이익: 토지 매각, 농림업경영체에 속한 작물과 토지 매각, 건물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

○ 토지, 건물, 작물 등의 판매로 발생한 이익이 다시 같은 고정자산에 대한 재투자 재원으로 이용 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임.

- 일본의 경우 농지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양도되는가에 따라 조세감면
- 독일의 경우 토지 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이 어디에 사용되는가에 따라 조세감면

나. 농업관련 자산의 보유, 상속·증여에 대한 조세특례¹³⁾

○ 농업경영체 자기책임이 아닌 타 사유로 수익의 현저한 감소 발생 시 부동산세 경감¹⁴⁾

- 부동산세는 농림업경영체, 토지, 건물, 주택 등으로 대상으로 함.
- 농림업경영체의 조수익이 정상적 수준의 50% 초과하여 감소: 세액 25% 경감
- 농림업경영체의 조수익이 100% 감소: 세액 50% 경감

○ 상속인이 농업경영체를 장기적으로 계속 경영함을 전제로 가치평가를 순이익의 자산화 가격 기준으로 하여 상속증여세 부담을 경감

- 독일의 상속·증여세는 상속인에게 발생한 부의 증가분임. 증가분에 대한 평가는 평가법을 따름.

12) 독일 법무부 인터넷법률. <<https://www.gesetze-im-internet.de/estg/BJNR010050934.html>>. 접속일: 2019.09.10.

13) 독일 법무부 인터넷법률. <http://www.gesetze-im-internet.de/erbstg_1974/BJNR109330974.html>. 접속일: 2019.09.10.

14) 독일 법무부 인터넷법률. <https://www.gesetze-im-internet.de/grstg_1973/BJNR109650973.html>. 접속일: 2019.09.10.

- 상속증여대상 재산의 평가는 농림업용 자산이 증여상속부터 15년 내에 매각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평가
 - 15년 내에 매각되지 않는 경우 경제가치¹⁵⁾와 최소가치 중 높은 쪽으로 평가
 - 15년 내에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청산가격으로 가치 평가
- 세율체계는 가족농의 유지에 유리하도록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의 혈연관계도 고려하여 근친일수록 낮은 세율 적용¹⁶⁾

1.2.3. 미국

가. 사업용 자본에서 발생한 자본이익에 대한 분리, 저율과세¹⁷⁾

- 농지에서 발생한 자산이익에 대해 다른 자산과 구별되는 세제상의 혜택 없음.
- 1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자산을 포함한 특정 자산의 매각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section 1231’ 이익으로 구분, 저율과세됨. 아래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이나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이 section 1231 이익 또는 손실에 해당됨.
 - 소 종류와 말: 역축용, 번식용, 낙농용, 또는 운동용으로 2년 이상 보유했던 것
 - 그 외의 가축: 역축용, 번식용, 낙농용, 또는 운동용으로 1년 이상 보유했던 것
 - 감가상각되는 개인 재산: 사업용으로 1년을 초과하여 보유했던 것(농업의 경우 농기계, 트럭 등)
 - 부동산: 사업용으로 1년 이상 보유했던 것
 - 수확하지 않은 농작물: 농작물이 재배된 토지를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농작물과 토지가

15) 경제가치는 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수익성으로 계산하며 표준적 연간 순이익에 18.6을 곱하여 계산함(할인율 5.5%). 표준 순이익은 지역, 경영형태, 경영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통상적 경영성과에서 경영주와 보수를 받지 않는 노동력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기준임금을 공제하고 계산됨.

16) 예를 들면 75,000유로의 상속액을 친자인 경우 세율 7% 적용함. 그러나 먼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 세율 30% 적용함.

17) <<https://www.investopedia.com/terms/s/section-1231.asp>>. 접속일: 2019.09.10.

동시에 동일 매수자에게 매각되어야 함.

- 파트너십 이익이나 손실의 배당: 앞서 말한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에 의한 것이며 그 자산은 1년을 초과하여 보유했던 것이어야 함.
- 목재의 절단 또는 처분: 1년을 초과하여 보유했던 것, 납세자가 판매 또는 교환 목적으로 목재 절단을 택하거나 특수한 절단 계약을 맺은 경우
- 수용: 1년을 초과하여 보유했던 사업용 자산

○ 장기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음¹⁸⁾.

-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일반세율 10%, 12%까지 0세율 적용 (일반세율에서 0세율 없음)
- 일반세율 22%, 24%, 32%, 35% 적용 구간에서 장기자본에 대해 15% 세율 적용
- 일반세율 중 최고인 37% 적용 구간에서 장기자본에 대해 20% 적용

나. 지방 재산세에서의 농지관련 특례

- 대부분의 주들에서 농지 가치평가를 시장거래가격이 아닌 현재의 농업적 사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하여 재산세 부담을 경감
- 농경지가 많은 주의 경우 경감혜택 조건으로 농지의 장기경작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다른 주들에서는 장기경작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 시 상당한 벌칙을 가하는 경우가 많음.

□ 캘리포니아의 사례(윌리엄슨 법)¹⁹⁾

-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농업용 또는 공활지 유지 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와 과세 표준이 되는 토지가격 평가는 시장가격이 아닌 농업적 사용에 기초함.

18)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taxtopics/tc409>>. 접속일: 2019.09.11.

19) <<https://www.countyofnapa.org/1088/California-Land-Conservation-Williamson->>. 접속일: 2019.09.11.

- 특례 적용조건으로 위치, 농지규모 등에서 만족해야 하며 장기적 경작을 약속하고 약속을 준수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줌.
 - 위원회나 시의회가 농업용 또는 공활지로 지정한 지구 내의 농지만 농업용 사용을 장기간 지속함을 계약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연결된 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 농지규모가 최소 10에이커(농업 집중지역 아닌 경우 40에이커) 이어야 함.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위원회의 인정이 있으면 더 작은 규모의 농지도 참여가능
 - 토지소유자와 기초자치단체가 최소 10년 간 농업용 또는 적절한 공활지로 사용 계약을 맺음. 비갱신을 하기 전까지 계약은 자동갱신됨.
 - 소유자의 계약 불이행과 용도 변경 시 농업용지의 경우 시장가격의 25%를 위약금으로 지불²⁰⁾
 - 주정부에서 특례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에 발생한 재산세 결손액의 일부 보전 가능

1.2.4. 영국

- 농지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다른 산업과 차별되는 특례는 없으며 농업 분야에서도 일반 사업체에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양도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과세 관련 감면 제도를 적용받음.
 - 사업용 자산에는 농지가 포함됨.

○ 농지에 대한 상속세 관련 감면제도가 존재함. 상속세를 100% 또는 50% 감면

가. 자본이득세 관련 감면²¹⁾

-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1년 동안 요건이 충족되었어야 함.
 - 사업에 사용된 자산: 납세자가 사업 직접 소유 또는 참여한 파트너십에서 소유했어야 함.

²⁰⁾ <<https://www.sccgov.org/sites/dpd/programs/wa/pages/wa.aspx>>. 접속일: 2019.09.11.

²¹⁾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ntrepreneurs-relief-hs275-self-assessment-helpsheet/h275-entrepreneurs-relief-2019>>. 접속일: 2019.09.12.

- 사업의 중단 이후 처분되는 자산: 납세자가 사업 직접 소유 또는 참여한 파트너십에서 소유 했어야 함. 자산처분이 사업 중단부터 3년 이내 이루어져야 함.
- 개인 회사의 지분 또는 유가증권: 납세자의 개인적 회사인 경우 지분 5% 이상 소유, 회사가 영업 중인 회사 또는 Trading Group의 지주회사이거나 납세자가 그 회사의 임원 또는 직 원이어야 함.

나. 사업용 자산 대체 시 과세이연²²⁾

○ 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일정기간 내 취득한 새로운 자산을 처분하기 전까지 자본이득세 부과 연기

- 구자산 처분가액보다 신자산 취득가액이 낮을 경우 자본이득세액 전체의 부과 연기
- 구자산 처분가액이 신자산 취득가액보다 클 경우 부분적 감면

○ 과세이연을 위한 충족 조건

- 납세자가 사업에 종사할 경우 신구 자산이 같은 업종에 사용됨. 같은 업종에 사용되지 않으면 신자산을 이용한 사업이 구사업의 종료부터 3년 내에 개시
- 납세자가 휴가용 주택임대사업을 함.
- 납세자가 상업적 임야를 점유, 영리 목적으로 관리
- 납세자가 자신의 개인적 회사에 자산을 제공
- 납세자가 강제 매수로 토지를 처분

○ 매각된 자산의 종류

-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권리
- 토지에 대한 권리
- 고정설비 및 기계

²²⁾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usiness-asset-roll-over-relief-hs290-self-assessment-helpsheet/hs290-business-asset-roll-over-relief-2019>>. 접속일: 2019.09.12.

- 선박, 항공기, 부양장치, 인공위성, 우주정거장 및 우주선
- 영업권
- 우유, 감자 또는 암양, 어미소 프리미엄 쿼터
- 어업 쿼터
- EU 농업정책의 단일지불제도 및 기본지불제도의 수급권
- 로이드 보험시장 보험인수권

다. 상속세의 농업재산 관련 특례²³⁾

○ 상속세는 325,000파운드 초과분에 대해 40% 세율 부과

-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자산이 325,000파운드 이하: 차액에 대한 공제권리 상속, 부부 중 나중에 사망하는 사람의 자산을 950,000파운드까지 공제
- 사업용 자산과 농업용 자산의 요건 충족 시 세액의 100% 또는 50% 감면

○ 면세 대상 농지²⁴⁾는 작물재배 또는 가축의 조방적 사육에 이용되는 토지임.

○ 납세자, 납세자가 통제하는 회사, 배우자 등이 자산 점유한 경우 상속시점 직전 2년간 농업적 목적으로 소유 및 점유되어야 함. 그 외의 사람이 점유 시 상속시점 직전 7년간 소유되어야 함.

○ 두 가지 경우에만 100% 감면, 그 외의 경우 50% 감면

- 소유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타인이 단기로 방목허가받아 사용했거나, 1995년 9월 1일 이후 임대된 경우
- 1981년 3월 10일 이전에 농지를 소유한 경우

²³⁾ 영국 정부. <<https://www.gov.uk/topic/personal-tax/inheritance-tax>>. 접속일: 2019.09.12.

²⁴⁾ 대상농지는 생장중인 작물, 말의 번식과 사육을 위한 농장, 적어도 10년마다 수확되는 나무, 야생동물 보호 프로그램 참여로 현재 경작하지 않는 토지, 윤작프로그램 참여로 현재 경작하지 않는 토지, 토지와 연계된 우유 쿼터의 가치, 농업경영체 지분과 관련 유가증권, 농장 건물, 농가 오두막, 농가주택 등이 포함됨.

1.2.5.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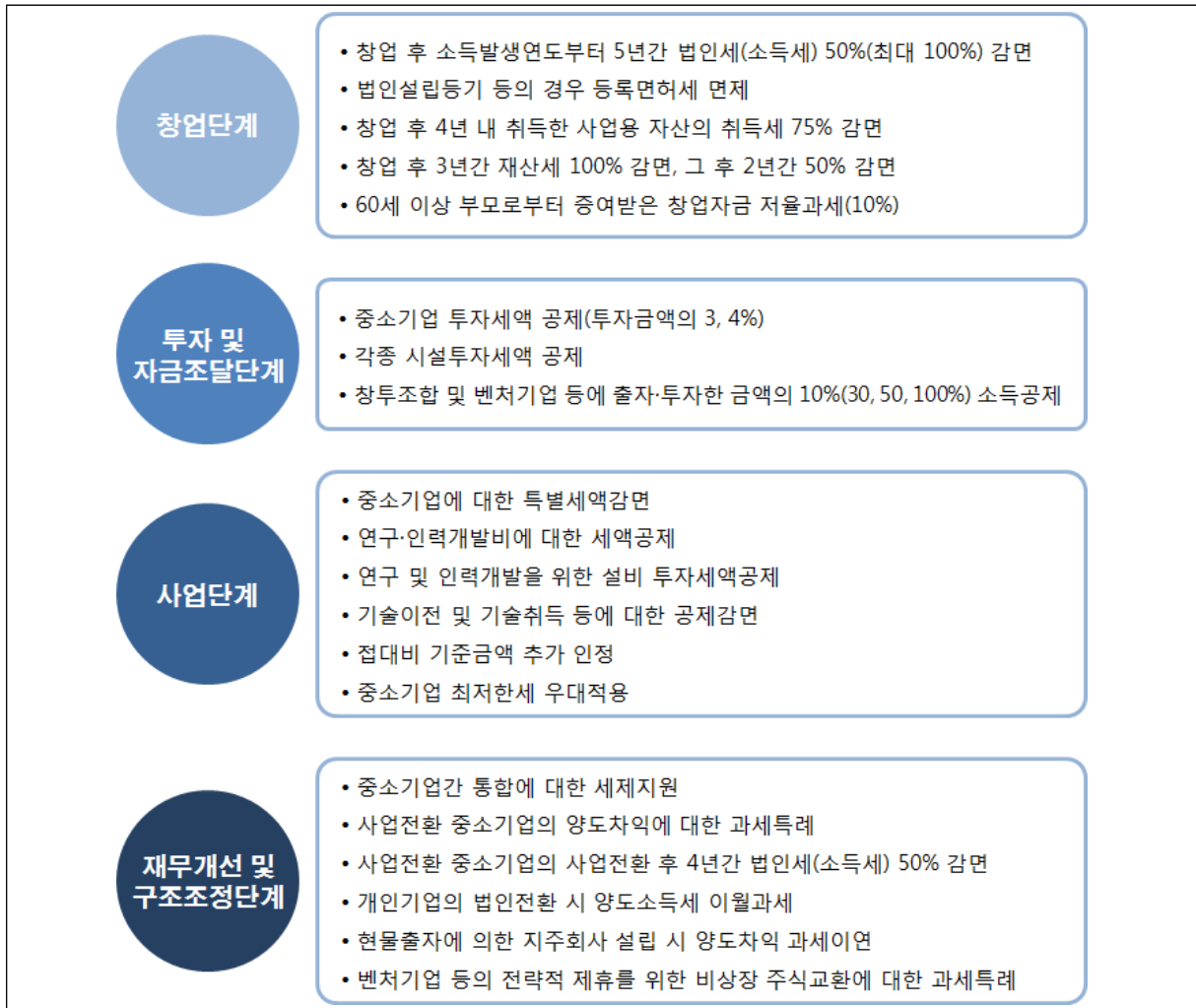
- 외국에서는 농지 관련 감면을 적용하면서 농지가 구조조정에 기여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농업에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만약 농업 사용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양도세 감면은 매도자의 자경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양수자에 대한 요건이 없다는 점과 대비됨.
- 농지보전의 관점에서 농지 관련 조세감면 요건에 양수자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거나 농업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지 관련 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또한 외국에서 농지 관련 감면은 완전면제보다는 저세율을 적용하거나 소득공제 또는 자산가치 인하 등의 방법을 통해 부분 감면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 조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나라 농지 양도세 감면제도는 감면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 중소기업 분야의 법인(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은 창업 단계에서부터 투자 및 자금조달, 인력 및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기업 통합 또는 사업전환이 이루어질 때에도 세제 혜택을 적용하여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이르는 성장 단계별 세제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음.²⁵⁾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외한 중소기업 세제지원 제도는 농업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될 경우 적용 가능함.

²⁵⁾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그 외 서비스업 등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천명 미만, 매출액 천억 원 미만 또는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임.

그림 4-1 중소기업 주요 세제지원 제도



자료: 국세청,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 2019. p. 26.

2.1. 창업 지원

○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받으며 상시근로자 증가 시 100%까지 감면받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한 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 감면받음.
-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업종은 광업, 제조업, 서비스 업 등이며 작물재배업, 어업, 임업은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받음.
 - 창업 후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75% 감면함.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함.

-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30억 원 한도)을 증여받으면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초과액은 10%의 세율을 적용함.

2.2. 투자 및 자금조달 지원

- 투자단계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등 설비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3%(신규 상장 중소기업은 4%)를 세액공제 받음.

- 그 외에도 연구인력개발,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안전설비, 생산성향상시설 등 시설투자금의 6~10%를 세액공제 받음.

2.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총 1억 원을 한도로 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30% 감면, 중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15% 감면함(표 4-2).
 - 농·임·어업 업체 중 평균 매출액이 80억 원 이하인 기업은 소기업, 8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인 기업은 중기업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

표 4-2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준

업종		감면율(%)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도매업 등”)	10
	수도권 안의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	20
	수도권 외의 지역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	30
중기업	수도권 외의 지역 도매업 등	5
	수도권 안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	15

자료: 국세청.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 2019. p. 52.

- 또한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개발비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며 특허권 등을 이전·대여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함.
 - (감면세액)연구개발비의 최대 40% +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50%와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25% 중 큰 것을 합산한 금액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를 우대적용하고 있음.
 - 일반기업에는 10~17%의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는 7%의 최저한세를 적용함.
-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투자 기업의 연구개발 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기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50% 감면함.

2.4. 고용 관련 세제지원

-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고용유지에 대한 세제지원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함.

- 소비성 서비스업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3년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함.
 - (상시근로자 증가 시) 수도권 700만원, 지방770만원 공제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시) 수도권 1,100만원, 지방 1,200만원 공제
- 중소기업의 유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로 적용함.
- 고용증가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증대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함.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근로자 1인당 총 임금은 감소하는 한편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 시간당 임금을 상승시킨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함.

표 4-3 고용창출·유지 등에 대한 지원

지원제도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 × 10% 	조특법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복직 후 2년간 지급 인건비 × 30% 	조특법 §29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 재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 × 30% -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 × 10% (중견기업 5%) 	조특법 §29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의 합계 ×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조특법 §29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기업(소비성서비스업 영위 사업자 제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조특법 §29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2018.11.30.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천만 원 (중견기업 7백만 원) 	조특법 §30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조특법 §30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대상 - 일정한 중소기업이 20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사회보험에 신규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 (2년 적용) 	조특법 §30의4

자료: 국세청,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 2019. p. 54.

2.5.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 통합 신설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해 통합법인이 양수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간 통합을 지원함.
-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거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한 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된 채무금액에 대하여 4년 거치 후 3년간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을 허용하여 구조조정을 지원함.
- 또한 사업 전환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와 익금산입 등을 적용하며 5년 이상 영위 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전환 후 소득 발생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함.

2.6. 시사점

- 중소기업은 생산과 연계하여 조세를 완전면제받기보다 고용 증진에 대한 기여,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대한 기여, 구조조정 실시 등 조건에 따라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음.
- 농업법인은 영리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세액공제제도들을 중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나 창업 지원에 대한 세제감면제도에서는 배제됨.

5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쟁점과 개선방안

1. 자경농민의 요건

-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조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표 5-1).
 - 농업인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자경기간 요건, 재촌요건이며 농외소득(사업소득금액과 총 급여액 합계)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음.²⁶⁾

²⁶⁾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에 따르면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 2. 21., 2016. 2. 5., 2017. 2. 7.>

표 5-1 농업인의 정의와 요건에 관한 조세감면 법조항

관련 법	농업인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자경농민의 조건 ○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 농지 소재지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 ○ 직전 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66조 등)	(감면대상) 농업인의 요건 ○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 ○ 2~10년 이상 직접 경작 - (직접경작의 요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원 미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검색일: 2019.07.29.

1.1. 자경기간 요건

1.1.1. 현황

- 농지와 관련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하는데 요구되는 최소 자경기간은 감면제도별로 상이함(표 5-2).
 - 농지 취득세 감면 등 농지·농업용 시설 관련 지방세 감면은 2년 이상 자경
 - 자경농지, 농지대토,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농업법인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은 4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자경
 -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 또는 해당 법인에 종사

표 5-2 감면제도별 자경기간 요건

자경요건 및 통작거리 적용 감면제도		자경기간
지방세	농지 취득세 50% 감면	2년
	농업용시설 취득세 50% 감면	2년
	도로, 하천, 공유수면 점용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2년
국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0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증여자)	3년
	영농상속공제(피상속인)	2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4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4년
	영농조합법인에 부동산 출자시 이월과세	4년
	농업회사법인에 부동산 출자시 이월과세	4년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검색일: 2019.07.29.

- 감면제도에 적용된 자경기간 요건은 부재지주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조세감면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 농지가 타 용도로 사용되거나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지책으로서 역할을 가짐.
 - 해당 토지를 농지로서 사용하는데 따르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상한다는 의미도 안고 있음.

-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경기간은 연속될 필요가 없으며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농자의 경우 과거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증빙된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취득과 관련해서는 자경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으나 자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긴 기간의 자경을 요구하고 있음.
 - 농지 또는 농업용 시설의 취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춤으로써 진입을 쉽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으므로 자경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1.1.2.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경기간 요건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자경의 정의와 요건, 증빙방법이 불명확한 데서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있음.

- 8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자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지만 실경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미비하여 주변 탐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실사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법적 심사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잦음.
- 세무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경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직불금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자경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직불금 제도의 왜곡을 불러일으킴.
- 지주가 농지를 실제로는 임대하였으나 자경 확인을 받기 위하여 직불금을 임차인이 아닌 지주가 수령하고 직불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료에서 제하거나 임차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우회하고 있음.
- 지주가 자경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신규 농업인의 경우 실제로는 해당 농지에서 영농을 하고 있으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둘째, 자경기간의 명확한 기준이 없이 감면제도별로 상이한 기간이 적용되고 있음.

-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에 대한 자경요건은 2년이며 증여세 감면의 자경요건은 3년인데 두 감면제도가 영농자녀에게 영농자산을 이전하여 가업을 승계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가 같으나 감면요건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셋째, 자경기간 계산 시 과거 시점에서 일정기간의 자경만 확인하면 되므로 이농자에게도 감면 혜택이 부여됨. 이는 실질적으로 도시 거주 부재지주에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 감면 규모나 대상 범위 면에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중요성이 크고 관련 논의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므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박훈·정지선(2009)은 농지 양도세 감면을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
- 김미복·김수석(2011)은 재촌경작자에 대해서는 완전면제, 재촌하지 않은 경작자는 50% 감면 제시
- 박민선(2014)은 해당 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농지보전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장기적으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
- 박정우·이준규(2013)는 현 제도가 이농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사실상 부채지주를 지원하므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
- 홍범교 외(2016)는 해당 제도의 폐지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농지보전 효과가 없다는 것에는 동의함.

○ 동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개편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경을 증빙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김보남·김현동(2010)은 면적이 작을수록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
- 정연식(2011)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소규모 농지 소유자는 증빙서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
- 이기육(2016)은 구체적인 자경 증빙서류를 시행규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표 5-3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선행연구

저자	개선방안
박훈·정지선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소득공제제도로 전환 • 자경기간 10년으로 연장 • 이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 거주지 제한규정 삭제
김보남·김현동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에 따라 증빙조건 차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면적 1,000㎡ 이내: 거주요건 증빙 - 농지면적 1,000~3,300㎡ 이내: 거주요건과 자경 입증 - 농지면적 3,300㎡ 이상: 거주요건, 자경, 농작물 매출현황 등 제출 • 세대단위의 전 세대원이 직접 경작을 자경에 포함
정연식(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경요건과 관련된 핵심 용어들의 개념 명확화 • 이농 후 지가 상승분에 대한 감면 배제 • 입대 전후 일정기간 재촌 자경한 청년의 군복무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 • 재촌요건으로 직선거리 기준만 남기고 시·군·구 기준 삭제 • 자경농지 증빙서류 제출 관련 규정 및 서식 개정 •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 소유자에 대해 세무공무원의 현지조사, 그 이하의 규모에 대해서는 기본서류를 이용해 증빙
김미복·김수석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요건으로 재촌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촌 경작자: 완전면제, 비재촌 경작자: 50% 감면
박민선 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주장 (양도소득세 감면규모와 농경지 감소면적의 상관성 없음. '농경지 확보' 성과 미약)
박정우·이준규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주장 • 신규 취득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 농지 대토, 분합 또는 비자발적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신규진입농의 농지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 취득세 비과세로 지방재정수입 감소분은 농지 양도소득세에서 일정 비율 충당
홍범교 외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 방향에 따라 결정 • 농정 반영을 위해 일몰규정 도입
이기욱(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경관련 개념 명확화 • 경작 가능한 거리에 소재한 농지의 자경 인정 • 구체적인 자경 증빙서류 규정
김태완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대상자를 '거주자'에서 '농업인'으로 명확화 • 이농 후 3년 이상 경과 시 농지 양도세 면제 배제 • 거주요건은 현행 유지 • 농작업의 2분의 1요건과 자기노동력 요건은 폐지

○ 한편 외국에서는 농지에 대한 세제감면혜택 부여 시 자경을 권장하고 있으나 농지가 지속적으로 농업에 사용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양도자의 자경여부가 세금감면의 절대적 조건이 아님.

- 신규 농업인구의 유입 저조, 농업인의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농지의 농업적 사용 유지 원칙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

- (영국) 상속세 공제 대상 농지가 농업을 목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되어야 하며, 농지 소유자가 자경한 경우 뿐만 아니라 방목(grazing)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단기 임대되는 경우 또는 (1995년 9월 1일 이후) 임대된 농지에 대해서도 100% 감면 적용

- (일본) 양도가 경영규모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사업 안에서 이루어지는가로 구분하고 양도되는 토지가 농업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배분되는가에 따라 혜택 부여

- (미국·영국) 농지를 포함한 사업용 자산 매각의 자본이익에 대해 매각 이전 1년 보유를 조건으로 일반소득세와 분리하여 저율과세²⁷⁾

- 우리나라의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과거'의 자경에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외국의 제도들은 '미래'의 자경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과 해외사례를 종합해 볼 때 농지 양도세 감면제도는 지주의 자경 여부보다는 농지가 농업에 계속 사용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방향 하에서 다음의 안을 검토함.

○ (1안) 농지와 축사용지의 자경기간을 $10+\alpha$ 년으로 확대하고 양수자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함. 양수자가 39세 이하의 청년농이거나 귀농인인 경우에는 100% 감면 적용, 기본 감면율은 100% 미만(예: 80%)으로 정함.

- 동시에 농지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장기적으로 농지를 위탁하는 자에게는 세제감면폭을 확대하여 농업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²⁷⁾ 미국의 경우, 0%, 15%, 20%로 저율과세 부과하며 영국은 10%로 저율과세 부과함.

- 현재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위탁된 농지에 대해서는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세율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비농업인 부재지주의 임대수탁사업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²⁸⁾.
- 농지의 유동화 확대, 장기적 영농기반 확보의 관점에서 10+ α 년 이상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 해당 안은 자경기간을 확대하여 부재지주의 자경 위장 방지, 농지투기 방지를 도모하는 한편 신규 인력의 토지 양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자에게 보상을 확대함으로써 농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용을 장려할 수 있음.

○ (2안) 양도소득세 면제제도 폐지, 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

- 현 면제제도는 단기 보유자의 농지 처분을 지연시키고²⁹⁾ 임차농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부를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농지관리의 목적에 있어 농지가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는 데에 중점을 둔다면 '자경'을 전제로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장기간 보유하면서 농지를 농업 생산에 이용되도록 한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함.
- 따라서 현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농지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감면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농지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농사에 활용될 수 있게 한 데에 대한 보상과 함께 단기 보유 농지의 동결효과를 줄여 농지 유동화에 기여할 수 있음.

28) 채광석 등(2016)이 부재지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농지임대수탁사업 미참여 이유로서 응답자의 19.2%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음.

29) 8년 미만 보유자는 세금감면이 없었다면 농지를 처분할 수도 있었으나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을 위하여 그 자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을 가짐. 이러한 현상을 동결효과(lock-in effects)라고 하며 동결효과는 일반적으로 자산구성과 자본배분에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짐(OECD 2006(박명호 2011 재인용))

표 5-4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안)

보유기간	공제율	공제율(1세대1주택)	농지 공제율(안)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100분의 24	100분의 2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100분의 32	100분의 27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40	100분의 33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100분의 48	100분의 4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100분의 56	100분의 47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100분의 64	100분의 53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0분의 72	100분의 60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80	100분의 67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00분의 73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00분의 80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00분의 87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00분의 93
15년 이상	100분의 30		100분의 100

○ (3안) 현행 제도 유지, 증빙절차 간소화

- 현행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인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거래규모에 따라서 증빙해야 하는 수준을 달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소규모 거래에 대해서는 재촌 요건만 확인하고 대규모 거래에 대해서는 재촌, 자경 요건을 모두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임.
- 그러나 농지 매도자가 자경 증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 농지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또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음.

○ 한편 상속공제 및 증여세 감면 적용 시 피상속인과 증여자의 자경요건은 상속 및 증여 시점에 농업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지의 전용을 방지하고 농지가 농업에 계속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데에는 증여자나 피상속인의 자경 여부보다는 수증자와 상속인의 자경 여부가 더 중요한 요건임.

1.2. 재촌 요건

1.2.1. 현황

-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가 포함된 시·군이나 농지 소재지와 인접한 시·군·구가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일정 거리(통작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재촌요건)이 적용됨.
- 지방세 감면제도 관련 통작거리는 20km, 국세 관련 감면제도 하에서는 30km가 적용됨.
 - 농업용 시설의 경우 20km의 통작거리가 적용되지만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은 통작거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2019년 신설).
 - 국세감면에 적용되던 통작거리는 당초 20km였으나 정부가 세제감면 확대를 위해 2015년에 30km로 상향조정하였음.

1.2.2.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통작거리는 도시거주 부재지주의 부당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전, 위탁영농의 확산, 스마트팜 및 축사 등 규모화된 영농을 위한 농업용 시설의 확대 등 농업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기준이 계속 적용됨.³⁰⁾
- 농업인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위탁 영농 비중은 확대되고 있음(표 5-5).
 - 논벼 농가 중 벼 묘판작업이나 모내기, 농약살포 등의 농작업을 위탁하는 농가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음.
 - 논갈이나 벼베기/탈곡 작업의 경우 위탁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논벼 농가가 농작업을 위탁하고 있음.

³⁰⁾ 수도작의 경우 주요 농작업을 위탁영농하거나 일정 기간만 집중적으로 농작업을 하는 것이 무방함. 축산의 경우에도 CCTV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일상적인 작업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음.

표 5-5 농작업별 위탁농가 현황

단위: 가구, %

연도	논벼농가 전체	작업별 위탁 농가				
		벼묘판작업	논갈이	모내기	농약살포	벼베기/탈곡
2005	935,318 (100.0)	275,783 (29.5)	599,529 (64.1)	582,450 (62.3)	303,177 (32.4)	792,684 (84.8)
2010	777,467 (100.0)	265,362 (34.1)	88,625 (62.8)	512,497 (65.9)	238,002 (30.6)	652,174 (83.9)
2015	635,364 (100.0)	296,791 (46.7)	388,992 (61.2)	429,736 (67.6)	276,451 (43.5)	516,986 (81.4)

주: 위탁농가는 전부위탁과 일부위탁의 합계임. 괄호는 논벼수확 농가 대비 위탁농가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 또한 교통이 발달하고 농업인의 차량 보유율이 늘어나면서 원거리로의 통근이 더욱 수월해지고 있음.

- 교통수단을 보유하고 농업에 활용하고 있는 농가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전체 농가 중 86.1%가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등 차량과 기타 교통수단(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보유하고 있음.

표 5-6 농가의 교통수단 보유 현황

단위: 가구, %

연도	농가 전체	교통수단 보유	교통수단 미보유
2005	1,272,908 (100.0)	660,805 (51.9)	612,103 (48.1)
2010	1,177,318 (100.0)	843,666 (71.7)	333,652 (28.3)
2015	1,088,518 (100.0)	936,904 (86.1)	151,614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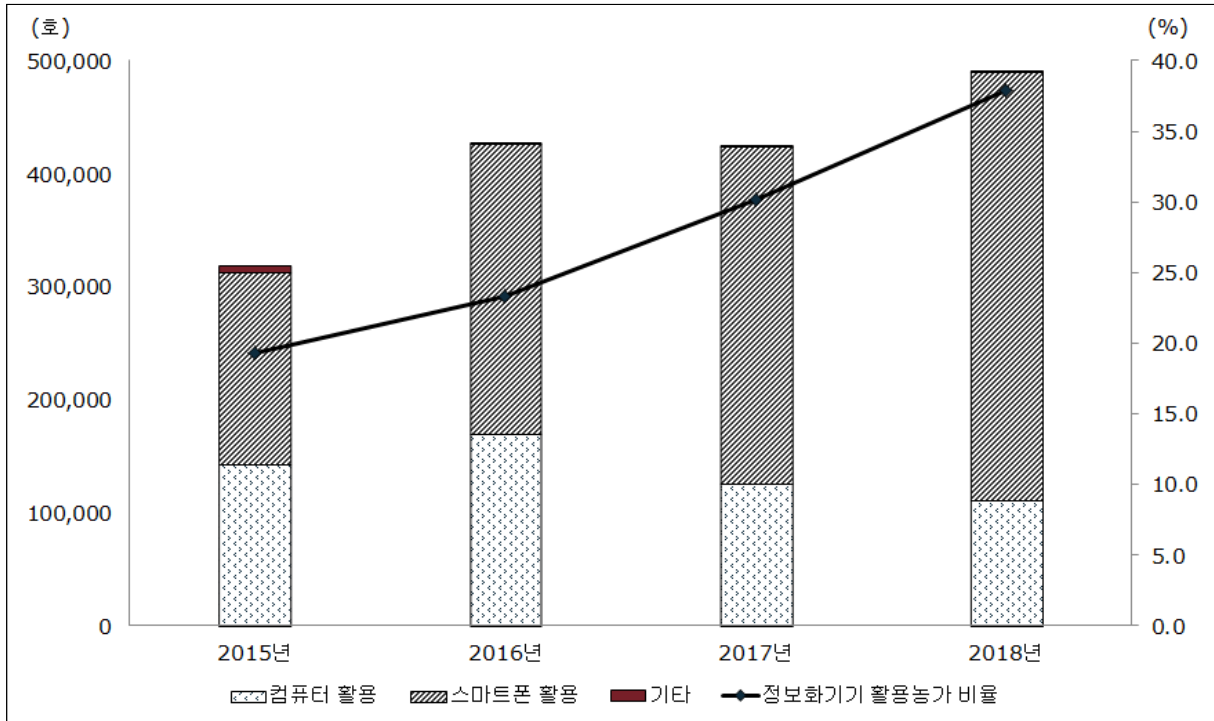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 통신의 발달, 통신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농업인이 일상적인 농작업을 원거리에서 관찰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점차 가능해짐.

- 농사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를 활용하는 농가는 2015년에 총 20만 9,875호로 전체 농가 중 19.3%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8년에는 38만 6,436호로 전체 농가의 37.9%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활용 농가는 2015년 16만 9,822호였으나 2018년에는 2015년 수준의 두 배 이상인 37만 9,080호가 스마트폰을 활용함.

- 농업법인의 정보화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농업분야의 정보화 진행 정도를 추측할 수 있는데, 생산환경관리시스템을 ‘매우 많이 활용’하거나 ‘활용하는 편’인 농업법인은 전체 설문 응답법인 중 58.6%이며 축사 및 가축사육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농업법인은 전체 응답법인 중 53.0%를 차지하고 있어 절반 이상이 정보화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음.

그림 5-1 정보화기기 활용 증가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

표 5-7 농업법인의 농업 관련 정보시스템 활용 수준

활용도	정보시스템	
	생산환경관리 시스템	축사 및 가축사육관리 시스템
매우 많이 활용	16.1	15.4
활용하는 편	42.5	37.6
보통	32.3	28.1
활용하지 않는 편	4.7	7.3
전혀 활용 안함	4.3	11.6
전체 사례수(개)	1,868	861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8. 『농업법인 정보화 수준 및 활용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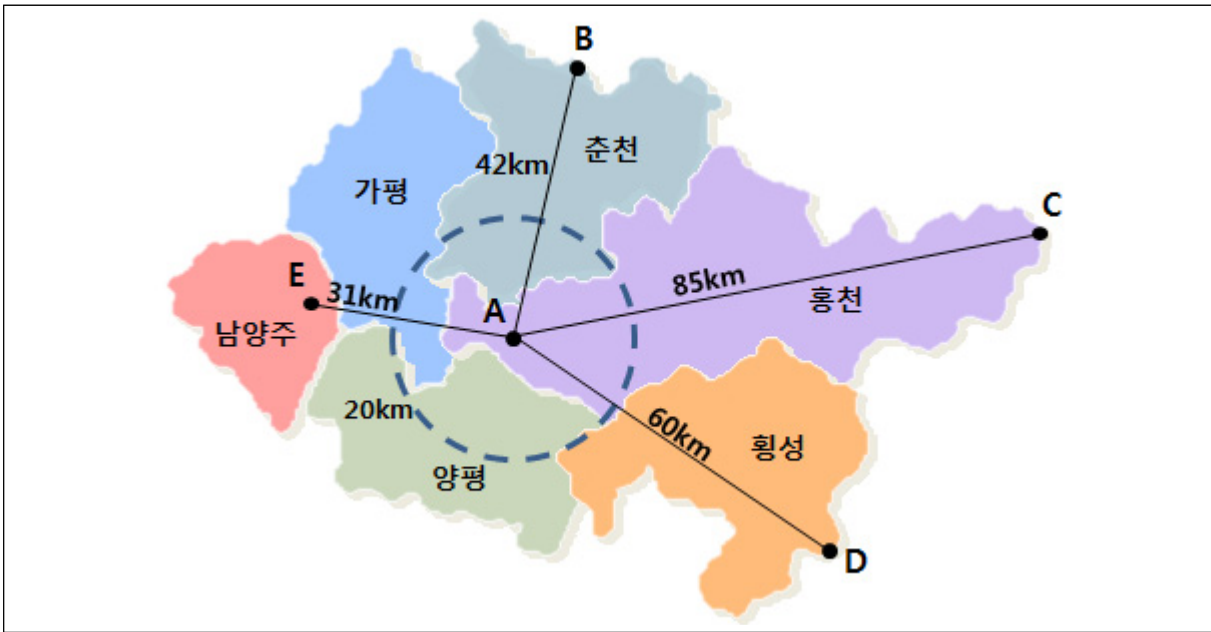
- 농업 여건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작목에 따라서 원거리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
 - 예를 들면, 계절성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목이나 인삼과 같이 재배지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작목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가 농업인 거주지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할 수 있음.

〈관외 경작 사례〉

김제시에 거주하며 미곡과 연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A씨는 동절기에 김제에서 연근이 수확되지 않으므로 동절기에도 연근 수확이 가능한 해남지역의 농지를 구입하여 연근을 재배하고 있음. 연근재배를 위한 농작업은 5일에 한 번꼴로 이루어져도 무방하므로 해당 농업인은 김제에서 해남으로 통근하고 있음.

- 또한 재촌요건의 세부 요건 적용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재촌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서 ① 농지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에 거주, ② 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거주, ③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국세는 30km) 이내 거주이며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하면 재촌한 것으로 간주됨.
 - 농지와 농가 간 이격거리가 20km를 초과하더라도 도로 및 교통상황에 따라서 통근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반면 동일 시·군·구 내에 있다 하더라도 지형 또는 교통상황에 의해 접근성이 낮아 통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예를 들면, 홍천시 A지역에 살고 있는 농업인은 B, C, D 지역에서 농지를 구입하여 경작한 경우 자경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그러나 A지역 농업인이 남양주의 E지역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면 E지역 경지는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거리상 E지역까지의 이격거리가 가장 짧음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므로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음.

그림 5-2 통작거리 예시



주: A는 농업인의 농지임.

자료: 다음 지도. <<https://map.kakao.com/>>. 검색일: 2019.08.12.

- 마지막으로 통작거리와 관련된 지방세와 국세 감면 요건이 상이한데 이는 제도 간 형평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현재의 재촌 규정 특히 통작거리 요건의 개선 필요성이 있음.
 - 교통의 발달, 스마트폰의 보급 및 활용 증가, 관련 기술개발 확대로 인해 원거리 경작 사례는 향후 더욱 증가할 수 있으므로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세감면 규정의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도로·교통여건 개선, 통신발달 등 농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통작거리 개선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농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통작거리를 확대하고 제도 간 규정을 통일하도록 함.
 - 다만 통작거리 확대로 인해 부재지주의 부당 수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확대폭 결정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1안) 지방세 감면요건인 20km를 30km로 확대

- 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요건을 국세 감면요건으로 통일하여 국세 감면요건에는 변화가 없음.
- 타 안에 비해 확대폭이 적어 농업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 (2안) 연접한 시·군을 포함시키지 않고 직선거리 52km로 통일

- ②번 요건을 폐지하는 대신 ③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통작거리의 확대로 실질적으로는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재촌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면적이 넓은 시·군·구의 경우 재촌범위에서 일부 제외되어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확대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음.
- 거리 기준에는 강원도의 최장거리 평균(51.3km)을 참조하여 동일 시·군 최장거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음.

표 5-8 도별 시·군의 최장거리

단위: km

도	도내시·군별 최장거리 평균	도내시·군별 최장거리 최댓값	도내시·군별 최장거리 최솟값
강원	51.3	95.8	16.8
경기	26.8	53.5	8.2
경남	38.3	51.7	16.8
경북	47.0	62.8	31.9
전남	36.8	56.7	9.3
전북	39.2	60.7	22.4
충남	36.4	47.4	13.2
충북	39.9	55.7	18.5
전체	38.5	95.8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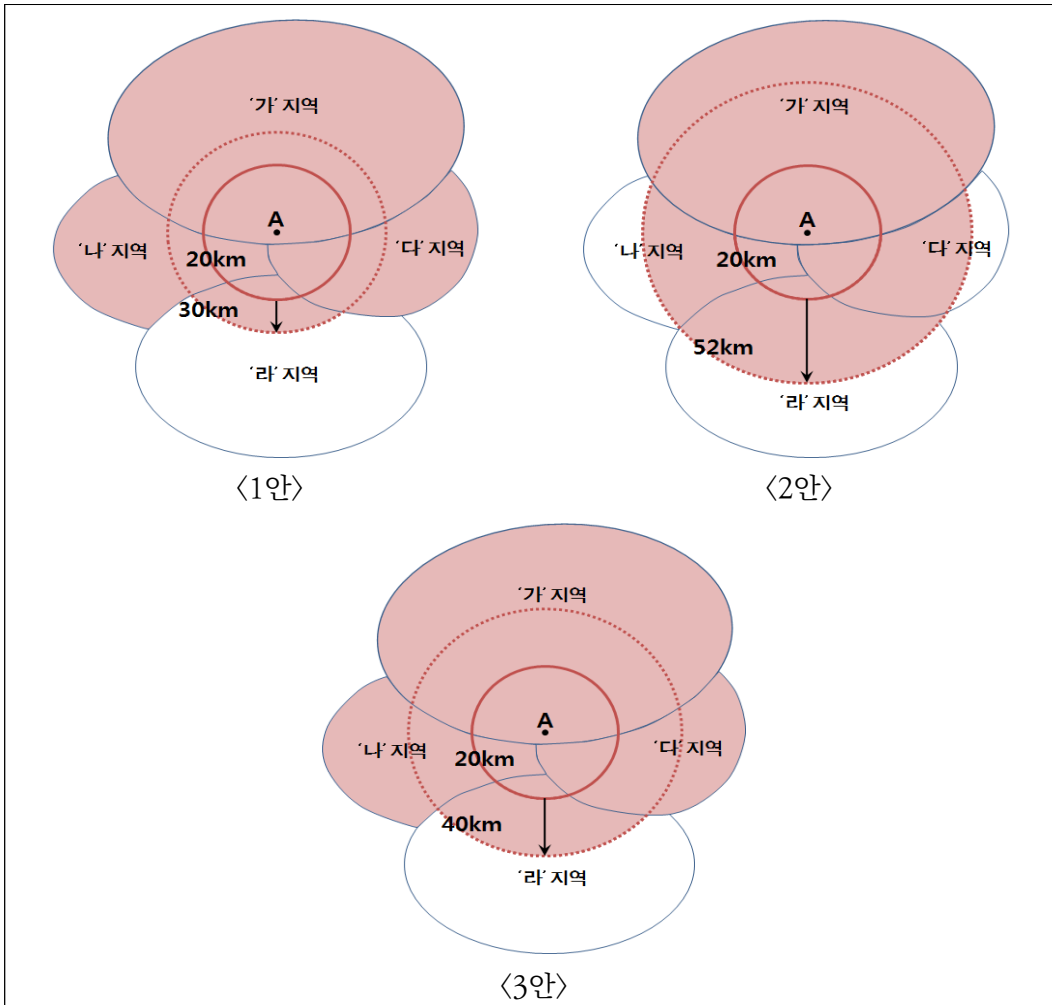
자료: 다음 지도. <<https://map.kakao.com/>>. 검색일:2019.08.12.

○ (3안) 국세·지방세 감면요건 상 통작거리를 40km로 통일

- 타 조건(동일 시·군 및 연접한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동일 시·군내에서의 거주요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통작거리를 확대(전국 시·군별 최장거리³¹⁾ 평균 38.5km 참조)함으로써 재촌요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31) 시·군의 최장거리는 각 시·군 경계의 직경거리 중 가장 긴 거리를 의미함.

그림 5-3 통작거리 대안별 적용 예시



주: A는 농업인의 거주지임.

1.3. 농외소득 요건

1.3.1. 현황

-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농업 외 사업소득과 급여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조 14항에서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 각각의 사업소득 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는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음.

1.3.2. 문제점과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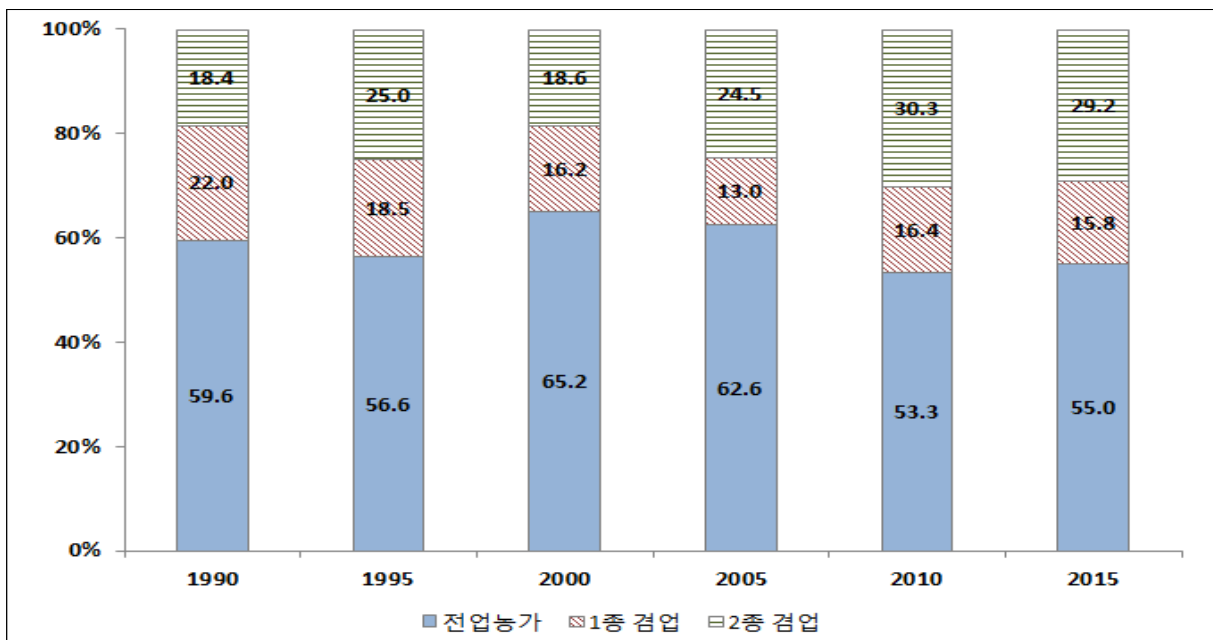
- 현재의 기준은 2009년에 결정된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 및 소득 상승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해당 기준은 2009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쌀직불금 개선안에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에게는 직불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9년 도시근로자가구 총소득의 80% 수준을 기준소득으로 정하였음.³²⁾
 - 그러나 도시근로자가구는 2009년에 약 4,624만 원이었다가 2016년에는 5,861만 원으로 26.8% 상승하였으나 소득 증가분이 현 농외소득 기준에 반영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음.
- 또한 농가의 경영활동이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유통·체험 등 1차 생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서 과거와 같이 농외소득을 제한하는 것은 농업발전 양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³²⁾ 이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법령 상 규정된 농외소득의 범위는 농업 외 소득(농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농외소득 기준 계산 시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 소득 전체 즉, 사업소득, 급여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인 총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령 상 규정된 농외소득 범위와 현 소득기준이 맞지 않음.

- 농업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가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6차 산업화, 다각화, 겸업 확대에 대응하고 있음.
- 그 결과 농가경제에서 농외소득의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농산물 소비감소 등 시장여건의 악화로 농가의 농외활동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음.
- 농업활동이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는 반면 농외수입 비중은 증가하여, 농업수입 비중은 2004년에 69.0%에 이르렀으나 2018년도에는 62.9%로 하락한 반면 농외사업수입과 급여소득이 농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1.0%에서 2018년 37.1%로 상승함.
- 따라서 농외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도 농업 생산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농가가 나타나고 있음.³³⁾

○ 따라서 농외소득 요건은 도시가구 소득상승과 농가의 경영 전략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현재의 수준보다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음.

그림 5-4 전·겸업 농가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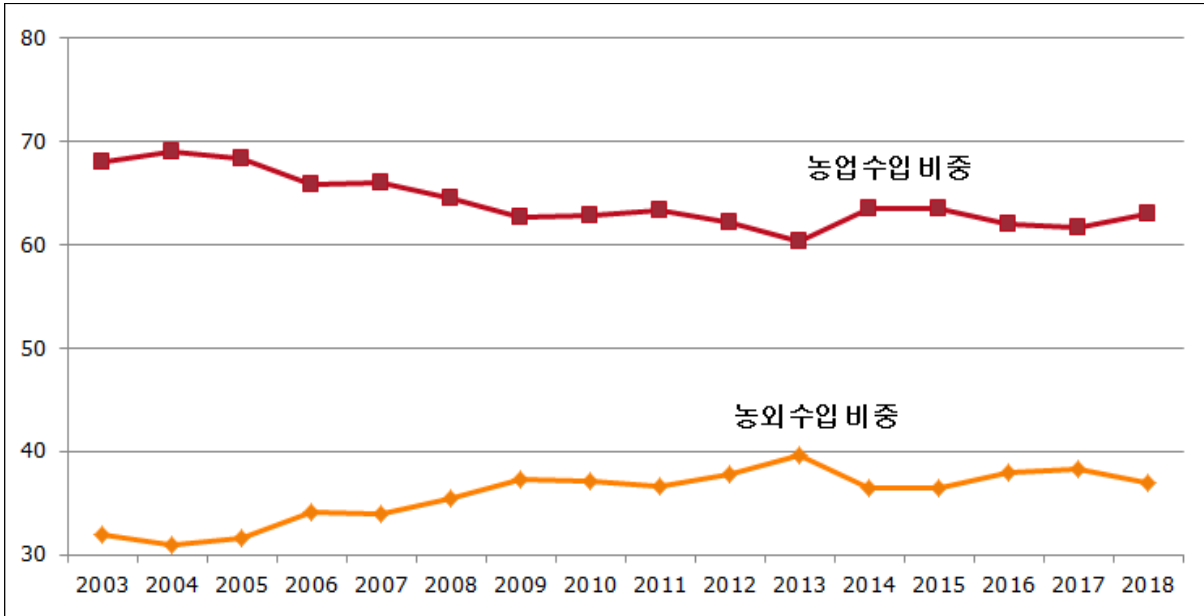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³³⁾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서 농업소득 의존도가 30%가 넘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약 0.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농가경제조사 2017 원자료 분석 결과)

그림 5-5 농가 총수입 중 농업 및 농외수입 비중

단위: %



주: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 대안으로서 도시가구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농외소득 기준을 재설정하는 방안과 절대액을 활용한 기준 대신 상대적 비율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함.

○ (1안) 도시가구 가구소득 중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농외소득 기준 설정

- (1-1안) 가계동향조사 상 도시근로자가구 전년도 평균 가구소득의 80%. 적용 시 자경기간 판정을 위한 농외소득 기준이 최고 5,186만 원으로 상승함.
- (1-2안) 가계동향조사 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전년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액의 90%. 해당 조건 적용 시 농외소득 기준은 최고 5,375만 원으로 상승함.
- 1-1안은 농식품부가 직불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사용하였던 기준을 원용한 것으로서 해당 기준을 매년 갱신함으로써 도시가구의 소득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음.
- 1-2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농외소득 규정을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며 농촌지역의 농외활동 기회가 도시지역에 비해서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90% 수준으로 설정하였음.
- 위의 안이 적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심사 시 해당 자경기간과 동일 기간의 기준을 비교하여 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표 5-9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기준 적용 예

단위: 천 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가구소득의 80%	37,264	38,726	41,016	43,432	44,605	45,743	46,431	47,198	48,025	51,857
근로소득·사업소득 합계액의 90%	38,017	39,833	42,019	44,499	45,730	46,763	47,021	48,230	49,016	53,747

주: 분기별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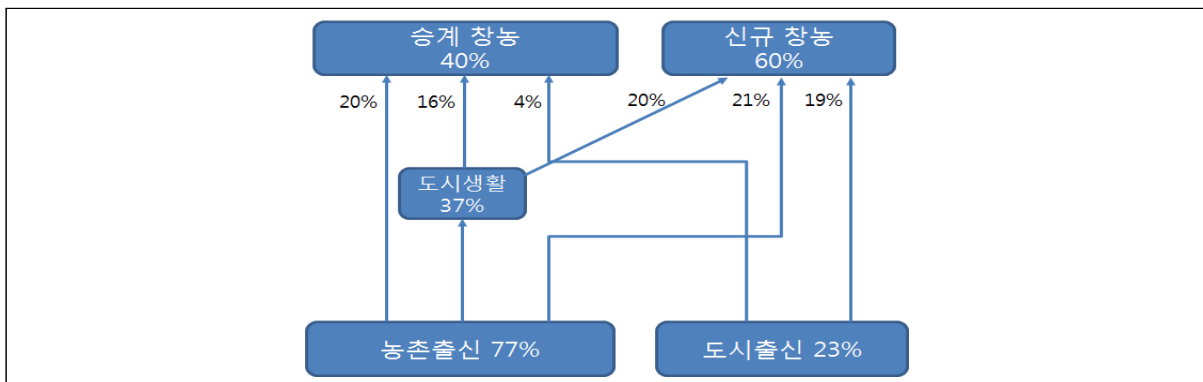
○ (2안) 해당 농업인의 총 수입 중 농외 사업수입과 총 급여액의 합계액 비중 40%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 미포함

- 해당 안은 절대액 기준이 농가의 경영전략 변화나 소득 상승 추이를 반영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 수준의 농업활동을 하는 가구를 농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음.
-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과거 16년간 농가 총수입(농업총수입, 겸업수입, 사업 외 수입의 합계)에서 겸업수입과 사업 외 수입의 평균 비중은 31.0~39.7%로서 40%를 넘지 않음.
- 이를 근거로 농업총수입에서 겸업수입과 사업 외 수입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임.
- 농가총수입의 확인은 농업인이 제출하는 매출증빙 자료(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2. 농업·농촌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 농업인적기반 유지와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신규 인력의 유입이 중요한데 신규 인력 유입은 신규 창농과 승계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마상진 외(2017)에 따르면 청년농업인의 유입 경로는 신규 창농이 60%, 승계 창농이 40%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신규 인력 유입확대를 위한 지원제도를 검토함에 있어 유입경로에 따른 지원제도를 구분하고 집단별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승계농과 창업농이 영농정착 과정에서 영역별로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면, 신규 창업농은 승계농보다 경영자금 확보, 농지 확보, 기본 생활비 확보, 멘토 확보, 주택 확보 면에서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반면 승계농은 창업농에 비해 영농기술 습득, 가족과의 관계 면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마상진 외; 2017).
- 이 절에서는 영농진입을 지원하는 조세감면제도와 영농승계와 관련된 조세감면제도를 나누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그림 5-6 청년농의 유입 경로



자료: 마상진 외. 2017.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2.1. 영농진입 관련 조세감면제도

2.1.1. 현황

- 영농진입을 지원하는 세제감면제도에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촌주택 등의 취득과 관련된 조세감면제도가 있음.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의거하여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³⁴⁾
 - 감면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임.
 - 취득세 공제한도는 280만 원 임.
- 또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 등 취득 및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농어촌주택의 요건은 취득 당시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 소재해야 하며 대지면적 660㎡ 이내,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이하임.
 - 고향주택은 연고지이면서 수도권이나 지가폭등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대지면적 660㎡,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이하여야 함.
 - 농어촌주택 면적 기준은 2003년 관련 법령이 제정될 당시에 결정되어 지금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취득가액 기준은 2003년에 7,000만 원이었다가 2007년에 1억 5,000만 원, 2008년에 2억 원으로 상승하였음.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함.
 - 자경농민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거나 후계농업경영인을 의미함.
 - 수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용도를

³⁴⁾ 해당 법령은 2018년 이전까지 취득세 면제 뿐만 아니라 5년간 재산세 면제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개정과 함께 재산세 면제 조항은 삭제되고 취득세 감면한도가 신설되었음.

변경하는 경우, 취득 후 2년 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함.

○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50% 감면받음.

-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귀농인은 이주한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며 귀농일 전까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어야 하고 농어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함.
-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km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경하지 않거나 농지 조성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를 매각·증여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함.

2.1.2. 문제점과 개선방안

○ 귀농·귀촌인 또는 창업농은 정착 초기에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청년농에게 창농초기의 어려움을 설문한 결과, 경영자금 확보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귀농·귀촌인 또한 여유자금의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음(표 5-10, 표 5-11).
- 또한 신규 진입농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창출하기까지는 최소 5년이 소요되며 영농경력이 짧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커짐(그림 5-7).

표 5-10 청년농 창농초기 어려움

창농초기 어려움	창농		전체
	신규	승계	
경영자금 확보	76.1%	64.1%	68.0%
농지 확보	53.5%	43.3%	46.7%
기본 생활비 확보	39.4%	37.1%	37.7%
영농기술 습득	26.5%	35.6%	32.9%
가족의 이해	15.5%	28.5%	24.3%
멘토 부족	18.1%	11.6%	13.6%
기본 상담창구 찾기	5.8%	8.9%	7.9%
주택 확보	10.3%	6.5%	7.7%

자료: 마상진 외. 2017.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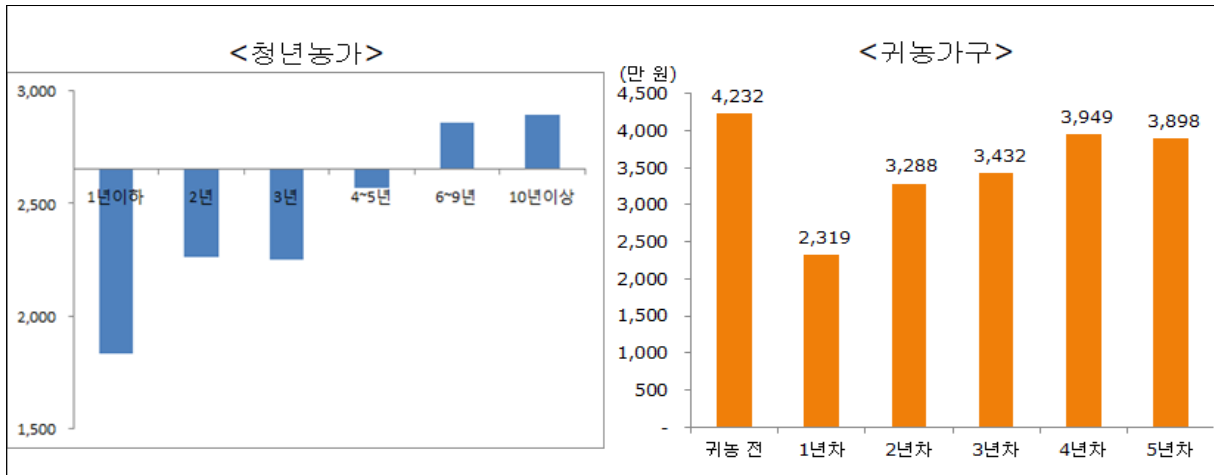
표 5-11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장애요인(복수응답)

단위: %

		귀농·귀촌 장애요인						
		여유 자금	농지 구입	지역주민 갈등	주거	생활여건 불편	영농기술 습득	기타
연령대	40세 이하	50.6	41.6	7.8	26.0	22.1	20.8	28.6
	41~50세	56.7	29.3	9.3	15.2	18.5	22.2	46.7
	51~60세	44.8	23.8	20.8	9.1	25.6	28.9	45.6
	61세 이상	35.6	17.8	20.0	8.3	28.9	33.9	53.3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52.7	23.3	8.6	8.2	24.0	32.6	49.5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49.3	29.5	19.0	12.3	24.3	23.1	41.8
	도시출신 귀농	41.7	24.6	19.8	14.7	23.0	25.9	47.1

자료: 마상진 외. 2018.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종합보고서』.

그림 5-7 영농기간별 농가소득



자료: 마상진 외.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2017. 농식품부.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8.

○ 따라서 귀농·귀촌인 또는 창업농 등 신규 유입인력에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신규 농업인력의 농지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 청년농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한 측면에서 농지 취득과 관련된 조세부담의 경감폭은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농지 및 농촌주택 취득과 관련된 조세감면 범위는 감면율이나 감면 대상 면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농지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농지 취득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농업 인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지방세 세수 감소로 인한 지자체 반발이 예상되므로 세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 필요함.
- 한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담세 능력에 따른 조세감면의 원칙에 맞지 않음.
- 현 제도는 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을 포함하며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를 할 때 지원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정부는 주택개량자금을 용자로 지원하고 있음.
 - 그런데 주택개량자금 수혜자만 취득세를 감면하고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주택개량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취득세 감면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위배됨.
 - 따라서 조세 감면의 형평성과 농촌 정착의 활성화 측면에서 개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농촌주택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농촌주택을 이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면 대상을 1세대 1주택으로 한정하고 감면 적용 기간을 5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청년 농업인 및 귀농귀촌인의 농촌 지역 피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감면 혜택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
- 영농진입 초기에 겪는 소득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외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귀농가구의 43.1%가 실제로 농외활동을 하고 있는데 농외 경제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가 농업소득이 적다는 것임. 귀농 가구의 농업외 경제활동은 농산물가공식품 직접 판매(25.2%), 자영업(23.0), 직장취업(22.4), 임시직(14.8), 농업임금노동(10.4) 등이 있음.
 - 그러나 절반 이상의 귀농가구가 농외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시간 부족, 지식 또는 기술 부족 등 개인적 요인도 있지만 취업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장애요인이 됨(그림 5-8).
 - 정부는 귀농·귀촌인 또는 청년농업인을 고용하는 농촌 지역 소재 사업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농촌 지역 소재 사업체가 신규 진입농가에 농외취업 기회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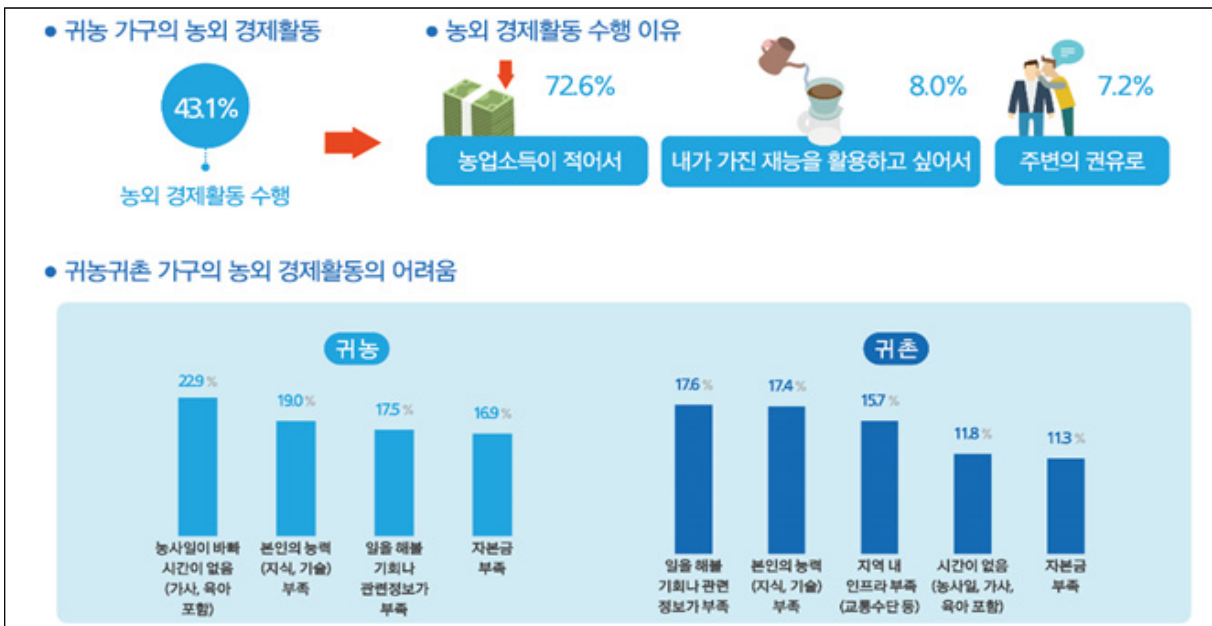
- 특히 신규 농업인이 농촌 소재 농업법인에서 농산물 가공·유통 및 체험 등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농업법인과 신규 진입농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청년 신규진입 농가의 세대주나 배우자를 고용하는 농촌지역 사업체에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지원대상은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중 일정시간 이상 귀농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과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 될 수 있음.
- 교육 수료 시점 또는 최초 고용시점으로부터 5년간 농외 취업 시 고용 업체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부여함.
- 일반 중소기업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해 해당 인력의 복직 후 2년간 지급 인건비의 30%까지 세액공제되고 있는 점을 준용하여 신규 진입농 고용시 해당자의 인건비의 30%까지 세액공제함.

○ 귀농·귀촌인의 주택 관련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농어촌 주택 및 고향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5-8 귀농귀촌 가구의 농외활동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 농어촌 주택 및 고향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일부로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임.
 - 그러나 1세대 2주택이라도 이사, 상속, 직계존속의 봉양, 결혼,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소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비과세 대상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로서 주택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상 면적 요건을 적용하면 농촌지역의 주택부수토지는 농어촌주택의 면적기준보다 높은 수준임.
 -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주택형태가 대부분 단독주택이며 가구원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주택기준(전용면적 85㎡)을 농어촌 지역의 일반적인 주택규모라고 가정할 때, 비도시지역의 주택부수토지는 850㎡까지 비과세 대상이 됨.
 - 이를 농어촌주택의 요건 상 정의할 때 대지면적이 660㎡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과 비교하면 농어촌주택의 면적요건은 다소 낮다고 할 수 있음.

표 5-12 농촌지역 단독주택 대지면적 평균 및 중간값

단위: ㎡

지역	평균	중간값
경북 예천군	1,038.0	705.0
경북 의성군	697.9	594.5
전남 무안군	900.6	565.0
전남 영암군	1,106.1	536.0
전남 함평군	897.7	648.0
전북 고창군	1,034.3	613.5
전북 순창군	761.5	486.0
충남 금산군	1,440.2	545.0
충남 예산군	805.7	660.0

자료: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http://open.eais.go.kr/opnsvc/opnSvcInquireView.do?viewType=1#>>. 검색일: 2019.07.18.

- 뿐만 아니라 인구가 희소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택부수토지가 넓은 주택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대지면적 기준은 다소 낮다고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농어촌 주택은 마당이 넓고 주택부지 내에서 텃밭을 가꾸는 경우가 많음.
 - 일부 시·군의 경우 단독주택의 대지면적 평균이 660㎡를 초과하고 있으며 중간값도 660㎡에 근접하거나 초과하고 있어 현재의 대지면적 기준이 현실에 비해 다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표 5-12).

- 면적 기준 외에 취득가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도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주택거래는 총 거래량의 61.8%일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대금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량은 농어촌 지역 단독 주택 거래량의 7.6%를 차지하고 있음.
 - 즉, 거래대금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도 대지면적 기준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은 총 거래의 7.6%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음.
 - 지역별로는 강원,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비교적 개발이 덜 된 지역에서 대지면적 660㎡ 초과 주택의 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대지면적 850㎡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거래량 중 65.9%가 2억 원 이하의 거래건수이며 660㎡기준과 비교했을 때 3.9% 가량 증가한 수준임.

표 5-13 매매대금 2억 원 이하 농어촌 주택 거래 비중

단위: %

대지면적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평균
660㎡ 이하	67.0	31.9	77.3	76.9	78.1	75.5	67.7	69.6	12.4	61.8
660㎡ 초과	10.0	3.1	5.2	5.7	11.3	11.1	10.8	10.2	1.2	7.6
850㎡ 이하	72.3	33.7	80.3	79.9	83.8	81.9	73.8	74.7	12.7	65.9
850㎡ 초과	4.6	1.3	2.3	2.6	5.5	4.6	4.8	5.1	0.9	3.5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 검색일: 2019.10.14.

-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생활과는 다른 농촌만의 경관을 유지하고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건강 문제, 전원생활 또는 은퇴 후의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려는 욕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마상진 외 2018).
- 전원생활 속에서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표 5-14 연령대별 귀농·귀촌 동기(5점 척도)

연령	귀농·귀촌 동기									
	생활비	사업 실패	영농 승계	도시생활 회의	농사일이 좋아	건강 문제	은퇴 후 여가	전원 생활	가치 추구	새 일자리
40세 이하	2.31	1.24	1.64	3.81	3.52	3.93	2.69	3.31	3.29	2.74
41~50세	2.28	1.84	1.67	3.49	3.11	3.60	2.85	3.38	3.33	2.54
51~60세	2.60	2.01	1.44	3.11	3.17	3.51	3.54	3.63	2.92	2.55
61세 이상	2.58	2.05	1.53	2.75	2.87	3.58	3.72	3.80	2.59	2.37
전체	2.49	1.93	1.53	3.21	3.13	3.58	3.32	3.58	3.02	2.53

자료: 마상진 외. 2018.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종합보고서』.

-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농촌 정주환경 개선이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서 농어촌 주택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안)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면적 기준을 850㎡로 상향 조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참고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가정하고 대지면적 기준을 설정함.
- (2안) 면적 기준 폐지, 가액기준 유지
 -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의 면적과 취득가액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해당 제도가 부동산 투기에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감면혜택이 실질적인 귀농·귀촌인에게 귀속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임.
 - 이러한 규제를 설정한 목적은 가액기준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2. 영농승계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2.2.1. 현황

-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영농상속을 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상속세 계산 시 영농상속 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공제재산은 농가가 소유한 농지, 초지, 산림지 또는 농업법인의 주식 등 사업용 자산임.
 - 영농상속공제는 농·축·임·어업을 대상 업종으로 하며 재산가액의 최대 15억 원을 공제함.
 - 영농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자경을 해야 하며 해당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임.
 - 자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농작물 재배·가축사육·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축산작업·산림조성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임.
 - 단,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상속재산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됨.

- 이와 유사한 제도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공제가 운영되고 있음.
 - 중소·중견기업에 200~500억 원 한도로 적용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종사하여야 함.
 - 가업상속공제는 영농상속공제와 달리 장수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별로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함.

-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을 적용함.
 - 대상 자산은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 이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를 감면함.
 - 증여자는 해당 농지 등의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하며 농지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함.

- 수증자는 증여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며, 증여자와 같이 해당 농지 등의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함. 단, 농어민후계자, 농업 및 수산 등 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는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만 만족하면 됨.
 - 증여세 감면 한도는 5년간 합계 1억 원(조특법 제133조 제2항)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와 유사하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감면하고 있음.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저율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며 7년 간 사후관리함.
-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분납, 연부연납제도(상증법§70, §71)
- (분납) 납부할 상속세 및 증여세 금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 후 2개월 동안 분할납부 가능하며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적용 불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 가능
 - (연부연납)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 설정해야 함.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소유 시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 분납 가능, 50% 이상 시 20년 또는 5년 거치, 15년 분납 가능
 - 가업상속을 제외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5년으로 통일

표 5-15 영농상속공제와 기업상속공제 비교

구분	영농상속공제	기업상속공제
업종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영농을 제외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공제 한도	15억 한도	200~500억 원 한도
조건	1. 「소득세법」 적용 영농 - 피상속인·상속인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 종사하며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 거주 2. 「법인세법」 적용 영농 - 피상속인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 경영, 발행주식의 50% 이상 계속 보유 - 상속인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 종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등 취임	1. 기업 요건 - (중소기업)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 (중견기업)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 2. 피상속인 -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3. 상속인 -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종사
사후 관리	상속개시부터 5년 이내 위반사항 - 영농상속재산을 처분(일부도 해당) - 영농에 종사하지 않음	상속개시부터 7년 이내 위반사항 - 기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않음 - 상속인의 주식 등 지분 감소 - 업종 변경(중분류 내 변경 허용)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 - 상속개시된 과세기간 말부터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에 미달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검색일: 2019.07.29.

표 5-16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영농을 제외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내용	- 증여세 100% 감면 - 5년간 합계 1억 원 한도	- 과세가액에서 5억 원 공제(과세가액 100억 원 한도) - 증여세율 10% 적용(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초과분은 20% 적용)
조건	1. 농지 요건 - 해당되는 농지등 ①농지: 4만㎡이내 ②초지: 14만8600㎡ 이내 ③산림지: 5년 이상 조림, 29만7천㎡ 이내 (20년 이상 조림 시 총 99만㎡ 이내) ④축사용지: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 범위 이내 ⑤어선: 20톤 미만 ⑥어업권: 10만㎡ 이내 ⑦어업용 토지: 4만㎡ 이내 -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 -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지구 외에 소재 2. 증여자 - 재촌요건 및 3년 자경 요건 충족 3. 수증자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 -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거주지 요건 충족,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영농	1. 기업 요건 -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2. 증여자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증여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상장법인인 30%) 3. 수증자 - 18세 이상이며 거주자인 자녀 - 수증자나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증여일부 터 5년 내 대표이사 취임 - 최대주주 등의 자녀 1인에 한해 적용
사후 관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위반사항 - 농지 등을 양도 -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음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 위반사항 -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음 -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또는 7년 이내 대표이사직 유지하지 않음 - 기업의 주된 업종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나 소분류 내 변경 제외) - 1년 이상 가업 휴업 또는 폐업 - 주식 등 수증자의 지분 감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law.go.kr/lstInfoP.do?lsiSeq=181871&efYd=20190916#J71:0>>. 검색일: 2019.09.18.

2.2.2. 문제점과 개선방안

- 상속공제한도와 증여세 감면한도액은 농가 및 농업법인의 자산규모, 농지가격 상승추이, 영농자녀의 납세능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영농승계 부담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
- 평균적인 영농상속가액(또는 증여자산가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국내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과 가액을 계산함.
 - 농림어업조사의 시도별 경지면적을 시도별 농가수로 나눈 평균 경지면적은 논 8,270㎡, 밭 7,360㎡(전국 기준)임.
 - 논인 경우 충남, 전북, 전남, 인천의 논 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밭인 경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제주의 밭 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된 전답의 거래면적과 거래액을 나누어 평균 단가를 구한 결과 전국적으로 논인 거래단가는 제곱미터당 8.2만 원, 밭은 제곱미터당 10.5만 원으로 나타남.
 - 그러나 거래단가는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제곱미터당 각각 64.5만 원, 88.2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은 각각 논 2.9만 원, 밭 3.2만 원으로 최저가격을 기록하였음.
 - 계산된 평균면적과 거래단가를 곱하여 농지의 가치를 계산한 결과, 농가 호당 논 면적의 가치는 6억 8,027만 원, 밭 면적은 7억 7,366만 원으로 나타남(전국 기준).
 -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와 특별시를 제외한 도 지역 중 경기도의 논 가액은 16억 601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도의 밭 가액이 49억 15만 원으로 도 지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17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 및 가액(2018년)

시도별	A: 평균 면적(㎡)		B: 평균 거래단가(만원/㎡)		A×B: 호당 평균 경지가액(만원)	
	논	밭	논	밭	논	밭
전국	8,270	7,360	8.2	10.5	68,027	77,366
서울특별시	508	617	64.5	88.2	32,775	54,411
부산광역시	4,128	3,322	32.6	32.5	134,541	107,833
대구광역시	2,233	2,606	28.1	23.4	62,817	61,093
인천광역시	10,094	5,969	13.8	23.2	139,696	138,328
광주광역시	5,580	3,406	18.8	21.8	104,776	74,394
대전광역시	1,582	2,704	23.3	22.4	36,780	60,603
울산광역시	4,659	3,889	16.6	19.9	77,160	77,248
세종시	7,578	5,730	20.8	23.5	157,934	134,550
경기도	7,613	6,739	21.1	25.2	160,601	169,564
강원도	5,039	9,939	6.4	6.6	32,480	65,424
충청북도	5,448	9,066	6.2	7.2	34,012	65,314
충청남도	11,881	5,254	5.6	8.5	66,413	44,530
전라북도	13,518	7,290	3.3	4.3	44,857	31,158
전라남도	11,981	8,046	2.9	3.2	34,756	25,679
경상북도	6,736	8,121	5.4	5.6	36,444	45,651
경상남도	6,668	5,076	7.7	8.5	51,638	43,145
제주도	5	19,008	17.4	25.8	95	490,015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농림어업조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 검색일: 2019.09.04.

- 도시근교 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평균 경영농지가액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근접한 수준으로서 해당 지역의 평균 이상 규모를 가진 농가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로 인해 상속재산의 일부만 공제받는 결과가 나타남.
- 영농상속공제한도는 일부 대농가 및 농업법인의 자산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개인농가의 농업용 순자산은 연도별·영농형태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최대 15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산액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임.
 - 영농상속공제한도와 대농가의 자산규모를 비교하기 위하여 농가경제조사의 조사대상 농가 중 가장 많은 자산액을 기록한 가구의 자산규모를 살펴봄(표 5-18).
 - 논벼농가의 농업용 순자산은 2018년에 최대 37억 1,000만 원까지 상승하였으며 평균은 25억 6,000만 원임.

- 축산농가의 농업용 순자산은 2018년에 36억 9,0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5년 평균치는 29억 2,000만 원임.
- 과수농가의 농업용 순자산은 2018년에 42억 5,000만 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최근 5년 평균치는 22억 원에 달함.
- 상시고용인 5인 이상의 농가는 농가경제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농가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최고치는 이보다 높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표 5-18 영농형태별 농가의 농업용 순자산(최댓값)

단위: 억 원

연도	논벼 농가	과수 농가	채소 농가	특작 농가	화훼 농가	전작 농가	축산 농가	기타 농가	2종 겸업
2014	26.6	16.8	17.9	3.5	15.6	16.0	25.3	13.4	17.4
2015	21.0	14.0	18.9	13.7	15.7	18.7	28.3	22.6	22.1
2016	21.3	16.5	22.7	3.3	17.8	9.6	28.0	26.5	23.8
2017	22.1	20.3	20.5	10.3	13.5	23.7	27.5	31.0	23.8
2018	37.1	42.5	20.8	5.8	11.2	10.7	36.9	17.1	18.2
평균	25.6	22.0	20.1	7.3	14.8	15.7	29.2	22.1	21.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각 연도.

○ 농업법인은 개인농가에 비해 자산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상속공제한도 적용 시 더 많은 경영체가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의 평균 순자산은 3억 3,000만원이며 최대 자산규모는 351억 원임.
- 농업회사법인의 평균 순자산은 6억 4,600만원이며 최대 자산규모는 1,644억 원임.

표 5-19 농업법인의 순자산 규모

단위: 백만 원

	농업법인 전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평균	431	330	646
최댓값	164,374	35,170	164,374

자료: 통계청. 『농업법인조사 원자료』. 2014.

- 이처럼 대규모 농가나 농업법인의 경우 동일한 규모의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100% 감면받는 것과 달리 상속재산의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나 한도액에 있어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폭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었음(표 5-20).
 - 영농상속공제는 1996년 말까지 공제액이 1억 원이었다가 이후 법 개정을 통해 한도가 15억 원까지 상향조정되었음.
 - 한편 가업상속공제는 2007년 말까지 1억 원의 한도가 적용되었으나 이후 법 개정을 통해 한도를 급격하게 상향조정하여 현재 200억 원~500억 원 수준에 이룸.
 -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대폭 증액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

표 5-20 상속공제제도 연혁 비교

적용기간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한도액	한도액
1997년 이전	5년 이상	1억 원	1억 원(영농, 양축, 영어 상속인) 2억 원(임업 상속인)
1997. 1. 1. ~ 1998. 12. 31.			
1999. 1. 1. ~ 2007. 12. 31.	5년 이상	1억 원	2억 원
2008. 1. 1. ~ 2008. 12. 31.	15년 이상	한도 30억 원	
2009. 1. 1. ~ 2011. 12. 31.	10년~15년	60억 원	
	15년~20년	80억 원	
	20년 이상	100억 원	
2012. 1. 1. ~ 2013. 12. 31.	10년~15년	100억 원	5억 원
	15년~20년	15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2014. 1. 1. ~ 2015. 12. 31.	10년~15년	200억 원	15억 원
	15년~20년	300억 원	
2016. 1. 1. ~ 2017. 12. 16.	20년 이상	500억 원	
	10년~20년	200억 원	
2017. 12. 17. 이후	20년~30년	3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자료: 국세청,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2012』, 20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SW/unSc.do?tabMenuId=tab73>>. 검색일: 2019.08.14.

○ 두 제도의 대상 업종이 다르고 각 업종의 사업규모의 평균적인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한도 조정 속도에 있어서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증액이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특별히 낮아야 하는 이유가 뚜렷하지 않고, 동일 규모의 기업이 업종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음.

표 5-21 지역별 호당 증여세액 추정치

단위: 만 원

시도별	호당 평균 경지가액		증여세액 추정치 (영농자녀 감면 미적용)		증여세액 추정치 (영농자녀 감면 적용)	
	논	밭	논	밭	논	밭
전국	68,027	77,366	9,211	12,946	0	2,946
서울특별시	32,775	54,411	2,333	3,764	0	0
부산광역시	134,541	107,833	35,816	25,133	25,816	15,133
대구광역시	62,817	61,093	7,127	6,437	0	0
인천광역시	139,696	138,328	37,879	37,331	27,879	27,331
광주광역시	104,776	74,394	23,910	11,758	13,910	1,758
대전광역시	36,780	60,603	5,356	10,681	0	681
울산광역시	77,160	77,248	12,864	12,899	2,864	2,899
세종특별자치시	157,934	134,550	45,173	35,820	35,173	25,820
경기도	160,601	169,564	46,241	49,825	36,241	39,825
강원도	32,480	65,424	2,244	8,169	0	0
충청북도	34,012	65,314	4,802	12,094	0	2,094
충청남도	66,413	44,530	8,565	5,859	0	0
전라북도	44,857	31,158	5,957	4,232	0	0
전라남도	34,756	25,679	4,951	4,136	0	0
경상북도	36,444	45,651	3,433	6,195	0	0
경상남도	51,638	43,145	7,991	5,443	0	0
제주도	95	490,015	0	196,507	0	186,507

주: 호당 평균 경지가액 전체가 과세가액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인적공제만 적용하였음(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액 공제 한도 5,000만 원 적용). 기타 공제나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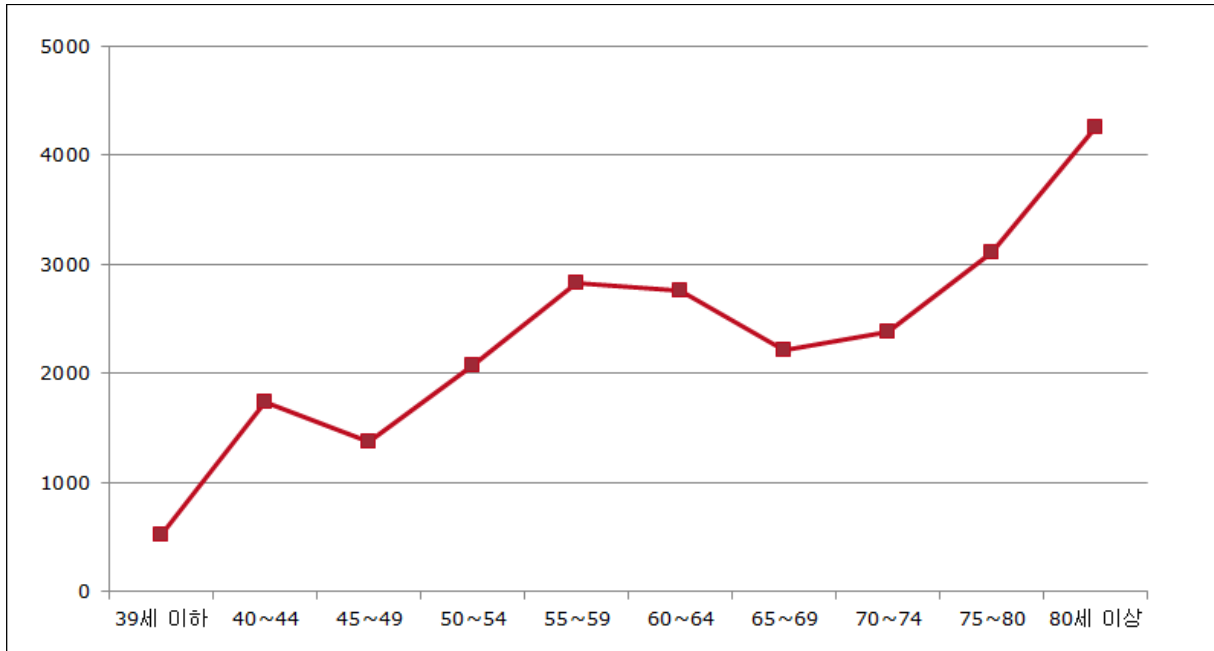
○ 한편 영농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는 평균적으로는 감면한도를 넘어서지 않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청년농업인이 농업생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납부하기 어려운 수준임.

- 영농승계자가 영농자산을 모두 물려받는다고 가정하고 호당 평균 경지가액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한 결과, 경기지역과 대도시 근교 지역의 농가 호당 평균 증여세는 2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증여세 납부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 현재의 수익 수준으로
는 증여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움.
 - 현재 논 10a 당 연간 순수익이 381,798원(전국 2018년)에 불과한 실정에서 영농승계자가
논을 증여받아 농산물 생산으로 증여세를 전부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그 외 영농자산을 처분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으나 농지 등 영농자산은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생산수단이므로 수증자의 생산기반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 이는 영농자산의 분할로 인한 규모화 저해, 농업 전반의 생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농업인의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영농자산 상속(또는 증여)규모를 고려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증여세 감면 한도를 증액할 필요가 있음.
- 실제적인 영농자산규모를 고려한 현실성 제고
 - 영농승계자의 세금납부능력 고려
- 단, 해당 제도의 목적이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농업인구 확대에 있으므로 승계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1안) 영농상속공제를 30억 원까지 단순 증액
- 최근 5년 간 개인 농가의 농업용 순자산 평균을 기준으로 30억 원까지 증액함.
 - 현 수준보다 상향 조정되었으나 농업법인의 자산규모, 농업자산의 가치 상승을 고려할 때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 (2안) 영농경력별로 차등화하여 45억 원까지 공제
- 장기영농종사자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상속공제한도를 높게 적용
 - 농업용 순자산은 경영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농업용 순자산의
최대치는 50세 미만 경영주의 농업용 순자산은 최대 20억 원을 넘지 못하는 반면 50세 이상
75세 미만 경영주의 농업용 순자산은 최대 30억 원 미만으로 증가하고 80세 이상 경영주의
농업용 순자산은 45억 원 미만으로 증가하고 있음(그림 5-9).
 - 경영주의 연령과 영농경력이 비례하므로 각 연령대에 상응하는 영농경력을 적용하여 경력이
길수록 상속공제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임.

그림 5-9 경영주 연령별 농업용 순자산(최댓값, 2014~2018 평균)

단위: 백만 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5-22 영농경력별 상속공제한도 예시

영농경력	상속공제한도
2년 미만	해당없음
2년 이상 10년 미만	15억 원
10년 이상 20년 미만	30억 원
20년 이상	45억 원

○ (3안) 가업상속공제 업종 범위 확대

- 농업사업자가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 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업종을 농업 분야로 확대
-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관계 부처의 협조가 선결과제임.

-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영농자녀가 농업생산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공제한도를 증액하거나 세율을 인하는 방안과 연부연납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있음.

- (1안) 청년농업인의 세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증여세액 공제한도 증액
 - 경기 등 일부 지역을 고려하여 2억 원으로 상향 조정

- (2안) 영농자녀의 영농자산 수증 시 연부연납 20년 적용
 - 수증자의 납세부담능력 고려하여 납부기간을 가업상속공제의 연부연납 기간에 준하여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

- (3안) 영농자녀의 증여세 세율 인하
 - 중소기업 분야의 가업승계 증여세 감면과 동일한 수준인 10%로 증여세율 인하

3.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3.1. 현황

- 농업법인은 법인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으며 농업법인에 출자한 농업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면제를 받음.
 - 농업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법인세 면제 대상이며 식량작물 외 작물재배업 소득도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함.
 - 또한 농업법인의 설립을 장려하기 위하여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설립에 필요한 자산 획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고 있음.
 - 법인 뿐만 아니라 조합원도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감면을 받으며 비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를 적용받음.

표 5-23 농업법인 관련 세제감면제도

대상	세목	세제지원 내용
법인	법인세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면제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 감면 - 영농조합법인 한도: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소득×{6억 원×조합원 수×(사업연도 월수÷12)}÷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수입 - 농업회사법인 한도: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소득×{50억 원×(사업연도 개월÷12)}÷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수입
		작물재배업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 감면 - 영농조합법인: 출자 조합원 당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 - 농업회사법인: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4년간 50% * 축산업, 임업,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취득세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2019. 12. 31까지)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2020. 12. 31까지)
	등록 면허세	법인설립 등기 시 면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50% 감면	
조합원	양도 소득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초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1과세기간에 1억 원, 5과세기간에 2억 원 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농지, 초지 제외) 농지와 초지 조성 허가받은 초지의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배당 소득세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전액 소득세 면제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작물재배업 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감면 - 영농조합법인: 연간 1,200만원에 대해서는 면제, 초과하는 금액은 5% 저율분리과세(종합소득세 비합산) - 농업회사법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검색일: 2019.07.29.

그림 5-10 농업법인·중소기업 세제지원 제도 비교



자료: 국세청,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 2019, 26p.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검색일: 2019.07.29.

-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와 유사한 지원제도로써 중소기업 세제지원제도가 있음.
 - 중소기업 세제지원제도는 창업-투자 및 자금조달-사업-구조조정의 각 단계별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음.
 - 법인의 설립과 창업을 위한 자산 취득에 대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제도는 두 분야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음.
 -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에서 농업법인으로의 현물출자에 세금감면 혜택이 집중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은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단계에서 농업법인 대상 조세지원은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로 이루어지지만 중소기업은 세액공제를 주로 이용해 감면받고 있음.
 -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 농업분야에 한정된 별도의 지원조치는 없으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3.2. 문제점과 개선방안

-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은 농업분야의 시장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루어짐.
- 농업법인은 소규모영세 자영방식에서 대규모·기업형 방식으로 농업경영방식을 개선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 법인 설립을 통한 규모화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받을 수 있는 세제 감면규모와 개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세제감면규모가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되어야 함(조세상의 무차별).
 - 만약 개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세제감면이 더 크다면 농업인은 법인화를 선택하지 않을 것임.
- 그러나 현 제도는 개인영농과 법인설립 간의 무차별 원칙에 어긋남.
 -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공제액은 1996년도에 개정된 이후 1,2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개인농가의 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가부업소득의 규모는 2016년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됨.

- 농업인은 식량작물 외 재배업 소득에 대해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 계산 시 조합원당 6억 원 이하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입금액 6~10억 원 규모의 농업인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불리한 선택임.

표 5-24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감면혜택 비교

소득구분	농업인(소득세)	영농조합법인(법인세)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비과세
식량작물외 재배업 소득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 비과세	조합원당 6억 원 이하 비과세
작물재배업외의 소득	수입금액 3,000만 원 이하, 농가부업규모 축산업 소득 비과세	조합원당 1,200만 원 이하 비과세

○ 농업인의 수입 규모에 따른 세제별 유·불리를 시산한 결과 수입금액이 6~10억 원인 농업인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불리,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농업인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함.

- 현 공제제도가 농업인의 세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입액에 따라 몇 가지 단순한 가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추정하였음.
- (가정) 동일한 수입수준을 가진 5명의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함. 수입의 범위는 식량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물재배업 소득임. 해당 농업인은 작물재배업 수입 외 다른 수입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농업소득률은 36.1%를 적용하였음(2018 농가경제조사 결과).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 외 다른 감면 제도는 적용하지 않음.
- (결과) 작물재배수입 6억 원 이하는 법인 설립과 개인 영농 시 동일하게 납세 부담이 없음. 수입금액 6억 원~10억 원 구간에서는 개인 농업인의 소득세액이 0원인 반면 법인 조합원의 1인당 세부담액은 2,888만 원 까지 발생하므로 개인 영농이 유리한 선택이 됨. 수입금액 10억 원이 초과 구간에서는 법인 설립이 유리함.

○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모화가 중요한 요건이 되는 만큼 법인설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최소한 소득세 수준과 동등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수입금액 10억 원 미만의 농업인에게 개인 영농과 법인 설립 간에 무차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개인 영농과 법인 설립 중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농업인의 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함.

표 5-25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및 개인농업인 소득세 시산 결과

단위: 억 원

1인당 작물재배수입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법인세액	조합원 1인당 세부담액	소득세 과세대상소득	농업인 1인당 소득세액
6억 원 이하	0	0	0	0	0
7억 원	1.8	0.2	0.04	0	0
8억 원	3.6	0.7	0.14	0	0
9억 원	5.4	1.1	0.22	0	0
10억 원	7.2	1.4	0.29	0	0
11억 원	9.0	1.8	0.36	4.0	1.3
12억 원	10.8	2.2	0.43	4.3	1.5
13억 원	12.6	2.5	0.51	4.7	1.6
14억 원	14.4	2.9	0.58	5.1	1.8
15억 원	16.2	3.2	0.65	5.4	1.9

○ 이에 식량작물 외 작물재배업 소득의 공제한도를 조합원 1인당 1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그 결과,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의 개인 농업인은 법인설립을 하거나 개인영농을 지속하거나 동일한 세부담을 지게 되며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농업인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게 됨.

6

요약 및 결론

1. 농업 분야 조세감면의 필요성

- 농업분야는 시장개방 확대와 고령화, 농산물 소비감소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안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경제에서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음.
- 그러나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충분히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생산기반이 유지되어야 함.
- 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가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즉 경관 보전,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 전통과 문화 보전, 토양유실 및 홍수 방지 등의 비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면 농업생산기반의 유지가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 농업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농지의 보전과 농업인력의 확충이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세제감면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2. 조세감면제도의 개선 방향

- 조세는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자원의 재분배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조세 체계는 자원의 배분에 있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조세 집행의 비용이 크지 않아야 하고 경제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과세함에 있어 공평성이 있어야 함.
- 조세감면제도는 조세제도의 기본 운영원칙 하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조세감면제도의 개편도 이와 같은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함.
- 농지와 관련된 조세감면제도는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고 농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음.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국내 농지 관련 양도세 감면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과 관련하여 양수자의 영농 지속에 대한 요건이 없거나 미비함.
 - 농지 양수자,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자경을 할 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원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력 및 농촌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감면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 및 청년 창업농 등 신규 농업인력이 농업생산기반인 농지와 주거기반을 확보하는데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정착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함.
- 농업법인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농업생산의 규모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 즉, 법인 설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역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함.
 - 다만, 유령법인이나 농업과의 연관성이 낮은 사업 영역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제한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세청. 2012.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2012』.
- 국세청. 2019.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
- 국회예산정책처.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기획재정부. 2018. 『2018 조세개요』.
- 기획재정부. 2018.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김기성. 1997. 『농림수산 조세제도의 변천과 발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준, 이주영, 김관수, 정규연, 이상원. 2017. 『2017년도 조세특례심층평가: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한국개발연구원.
- 김미복, 김수석. 2011.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보남, 김현동. 2010. “농지에 대한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 10-1집.
- 김형준, 김진. 2006. 『면세유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김태완. 2019.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영교육연구』 제34권 제1호. 한국경영교육학회
- 노용환, 박진도. 2015. 『농업보조금 관련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 방안』. 국회예산정책처.
-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 박기백, 이명현, 정재호. 2003. 『농업부문 조세지원 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박기백, 정재호. 2003. 『조세감면의 합리화와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박명호. 2011.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과제도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박민선, 허남혁, 강마야, 이관률. 2014. “농업보조금 지원의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 박상원, 김형준, 송헌재. 2010.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박정우, 이준규. 201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의 연구”. 『세무학연구』 제9-3집. 한국세무학회.
- 박훈, 정지선. 2009.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9-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 원종학, 임소영, 정재호, 이명현. 2014. 『농어민 생산 관련 지원 조세지출 효율성에 관한 연구 - 농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이기육. 201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제47권. pp.141~165. 한국세무회계학회.
- 임소영, 김윤진, 강수진. 2018. 『농업분야 부가가치세 제도 발전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소영, 김윤진, 이실. 2016.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경제적 함의와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연식. 201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12권2호. pp.281~315. 한국세무학회.
- 한국조세연구원. 2012.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 최기호, 정지선, 최보람. 2013. 『농업 분야 조세제도 개편방안 연구 - 농업 분야 조세지출 현황 및 평가

- 』. 한국세무학회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최준욱, 성명재, 이명현, 조은빛. 2017.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통계청. 각 연도. 『귀농어·귀촌인 통계』.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통계청. 2014. 『농어업법인조사 원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세통계연감』.
 홍범교, 이태호, 이명현. 201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 2018. “Taxation in agriculture”. Discussion paper at the 77th session of 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TAD/CA/APM/WP(2018)30/REV1

〈참고 인터넷 사이트〉

-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http://open.eais.go.kr/opnsvc/opnSvcInquireView.do?viewType=1#>〉. 검색
 일: 2019. 07. 18.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law.go.kr/LSW/unSc.do?tabMenuId=tab73>〉. 검색일: 2019. 08. 14.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검색
 일: 2019. 07. 29.
 국세청.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8.asp?cinfo_key=MINF5720100726152116&flag=05〉. 검색
 일: 2019. 08. 14.
 다음 지도. 〈<https://map.kakao.com/>〉. 검색일: 2019. 08. 12.
 MDIS. 〈<http://mdis.kostat.go.kr>〉. 검색일: 2017. 6. 29.